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강력범과의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Recidivism of the Released Property-offenders :
In Comparison with Violent Offender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요 약

1. 머리말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범죄현상의 하나는 전과를 가진 재범자 비율의 폭발적 증가였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는 재산범과 강력범의 재범자 비율이 각각 14.1%와 11.6%에 불과했던 반면 20년 후인 1992년에는 각각 무려 51.3%와 53%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범의 증가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재범현상은 범죄의 성격 또는 유형에 따라 그리고 범죄경력의 진전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산범의 경우 강력범과는 달리 범죄의 성격이 매우 도구적이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재범현상의 원인과 지속과정을 살펴보고, 형벌이나 교정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재범방지 및 경력범죄자에 대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재범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종단적 설계가 도입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의 자료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재산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1978년 출소한 605명의 재산범 출소자와, 강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1978년에 출소한 383명의 강력범 출소자들에 대한 수용 당시의 기록(재소자 신분카드, 수형자분류심사표)이다. 이 기록들에는 조사 대상자들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로 인하여 복역할 당시 분류의 목적에서 조사된 가족관계 등과 같은 개인적 자료들, 그들의 범죄 및 비행력 그리고 범행의 형태 및 특성 등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 있고, 또한 재소자 신분카드에서

는 재소당시 받은 기능교육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교육과 징벌, 사방배치 상황 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자료는 경찰전산망을 통해 각각 약 6년과 7년 후에 이들에 대해 실시한 범죄경력조회 결과이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의해 탐지된 조사대상자들의 모든 범죄들에 대한 주요내용들, 즉 범죄명, 입건일, 형확정일 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의 자료는 첫째, 이들이 어떤 범죄를 범하고 경찰에 입건되었는지에 대한 전과자료와, 둘째, 그 다음에 어떤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분류를 위해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셋째, 이들이 이후 수감되어 있을 당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료들, 마지막으로, 이들이 출소한 후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변수들이 재범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사건사 분석이 각각 사용되었다.

그리고 범죄의 전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이행렬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8가지의 범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Farrington의 전문화계수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text{전문화계수} = \frac{\text{관찰치} - \text{기대치}}{\text{열합계} - \text{기대치}}$$

위에서 관찰치와 기대치는 모두 전이표의 대각선 셀의 관찰치와 기대치를 나타낸다. 이 계수의 유용성은 만약 완전한 일반화가 일어난다면 이 계수가 0이 되고, 만약 완전한 전문화가 일어난다면 이 계수가 1이 된다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1〉 사용된 변수들의 의미

변수군의 이름	변 수 명	의 미
종속변수	재범의 시기 및 여부	출소후의 첫번째 입건
처벌관계 변수	상대적 업격성	각 유형의 범죄들에 대하여 표준화한 선고형량
	보상/비용합수	$\ln(\text{보상/비용})$
	체포기간	범행 후 입건되기까지의 기간
본범관련 변수	집단범 여부	집단범인지 단독범인지의 여부
	범행형태	범행의 계획정도
비행 및 범죄경력 관련변수	전과범수	전과의 회수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	최초로 비행이나 범죄를 범한 연령
	문신/칼자국 여부	몸에 난 문신이나 칼자국 여부
	최초 음주연령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연령
	최초 흡연연령	최초로 흡연을 경험한 연령
	최초 성경험 연령	최초로 성경험을 한 연령
교정관련변수	가석방여부	가석방인지 만기출소인지의 여부
	징벌유무	교도소에서 재소시 징벌을 경험했는지 여부
	2급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여부	재소 당시 2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 는지 여부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	출소시 연령	출소할 당시의 연령
	학 력	최종학력
	생활수준	빈부와 같은 생활의 수준
	지 능	IQ
	가족원수	가족 구성원의 수
	종 교	종교유무
	혼인관계	혼인유무
	최초 직업연령	최초로 직업을 가진 연령
	보호관계	보호의 정도

〈표 2〉 전이행렬분석을 위한 범죄의 유형화

유형화된 범죄명	포함된 범죄
폭 력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강 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강도예비, 특수강도등, 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등의 재범 등
강 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도추행, 강간치사상, 미성년자 간음 등
살 인	살인, 존속살인, 위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등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절 도	절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사 기	사기
횡 령	횡령
기 타	그외 범죄

3. 분석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지적되는 범죄 및 비행의 경력은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강력범죄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재산범죄, 특히 사기의 경우 '보상/손실 함수가 재범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강력범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와는 달리 사기범죄의 경우 매우 도구적이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행해진 행동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범죄경력으로의 진입연령은 평균 24세였으며, 특히 19세에 가장 많은 사람이 범죄경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범죄자가 19세에서 22세 사이에 범죄경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대부분의 범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인 19세 전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범죄경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절도의 경우 가장 높은 재범률과 전문화 경향(1범에서 2범, 그리고 2범에서 3범으로 전이할 때의 전문화 계수가 각각 .46과 .38)을 나타냈고, 사기와 폭력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재범률과 전문화 경향(사기의 경우 1범에서 2범 그리고 2범에서 3범으로 전이할 때의 전문화 계수가 각각 .28과 .37이었고, 폭력의 경우 .32와 .27)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의 경우, 다음번에도 다시 절도를 범한 사람이 무려 60%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범죄 외에는 전문화경향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섯째, 재산범의 경우 강력범죄로 전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강력범의 경우 재산범으로 전이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으며, 범죄를 거듭할수록 절도나 사기, 폭력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함의

강력범죄에 비해 재산범은 성격상 상당히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산범 중에서도 대표적 유형인 절도와 사기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절도는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직업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사기의 경우 재범률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선택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기의 억제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확실하게 박탈하거나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 특히 절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고, 전문화의 수준이 높고, 특히 출소 후 단시일내에 재범을 하는 경향이 높은 직업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절도의 경우 범행 후의 사후적 대응이나 재소시의 사회복지교육보다는 출소 후를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깨어 줄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최근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범죄현상의 하나는 전과 2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의 증가였다. 이것은 특히 재산범에서 두드러지는데,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재범자의 비율을 20여년 전인 72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전과 1범(본범 포함 2범)에서 전과 4범(본범 포함 5범)까지의 재범자 비율이 1972년에는 각각 8.7%, 2.5%, 1.3%, 0.6% 밖에 안되던 것이, 1992년에는 각각 13.7%, 10.0%, 7.2%, 5.3%로 늘어나, 1972년에서 1992년 사이의 20여년 동안 1범에서 4범의 전과를 가진 경우는 각각 5%, 7.5%, 5.9%, 4.7% 포인트 증가했는데 반해서, 전과 5범 이상인 사람의 경우 무려 14%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재산범의 재범자 비율의 증가(37.2%)는 대부분 다수의 전과를 가진 경력범죄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전과를 지닌 재범자들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실태 및 관련요인 등 재범현상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몇의 재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재범을 연구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재범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이윤호, 1991; 최인섭 외, 1993; 김영섭, 1983). 둘째, 재범이나 비행의 예측을 위한 척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연구가 있고(이병기·노성호, 1994; 김준호·이동원, 1994), 셋째, 범죄경력측면에서 행해진 연구가 있고(김준호·이순래, 1995; 이병기·류철원, 1995), 넷째, 본격적인 범죄학적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용시설의 개선을 중심으로 재범방지대책을 논한 실무자들의 연구가 있다(이원석, 1989; 변동윤, 1991).

이렇듯 우리가 재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결국 재범의 실태를

1) 3장의 <표 3-5> 연도별 재산범의 전과자 추이 참조.

파악하고 원인과 과정을 밝혀내어, 궁극적으로는 범 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산범의 재범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과정으로서 범죄경력 유형을 밝힘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전과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1993년 수행되었던 연구(최인섭·박철현,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와 연속성을 가지는 과제로서, 그 연구의 강력범의 사례에 재산범의 사례를 보충하여 한국의 재범현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산범의 사례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분석의 많은 부분들은 강력범과의 비교에 할당될 것이다.²⁾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범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재범과 관련한 이론적 경향을 살펴본다(1장, 2장).

둘째, 공식통계를 통하여 재범의 상황과 추이를 살펴본다(3장).

셋째, 1987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988명의 출소자에 대한 재소당시의 기록과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 재범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4장).

넷째, 요약과 함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5장).

2)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강력범의 경우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강간,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대전교도소, 수원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원주교도소, (구)인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7년 출소한 383명을 의미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외적통제이론 — 억제이론, 합리적선택이론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대체로 일탈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전통으로 나누어진다. 범죄자의 유전자 특성을 연구한 실증주의 범죄학은 일탈적 행동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제이론이나 억제이론은 일탈적 행동을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구적인(instrumental) 범죄이며, 행위의 과정이 일반적인 행동(즉, 비일탈적 행동)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재산범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들 범죄자들만의 고유한 어떤 요소를 찾기보다는 일상적 행위자와 같은 차원에서 이들의 행위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 중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규범위반이 일반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이로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일탈동기를 가정하기보다는 왜 소수의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다(Liska, 1988, pp.131-132). 기존의 범죄이론이 범죄자들만이 가지는 특성이나 비정상적인 동기를 찾으려는데 반해, 통제이론은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일탈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범죄를 기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통제이론은 규범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상황적 요인, 그 중에서도 사회적 통제에 주목하게 된다. 즉 사회적 통제는 규범을 따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제이론은 외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론과 내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외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론은 주로 공식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론은 주로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 규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증주의를 대표하는 규범적 측면의 접근과 앞서 서술한 통제이론과 같은 도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Gottfredson과 Hirsch의 자아통제이론은 범죄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경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면서도,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는 개인의 지속적인 어떤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인다(최인섭·이성식, 1994, pp.32-34 참조). 그러나 이들의 통합이론은 범죄성향이라는 심리학적 요소와 범죄행동이라는 사회학적 요소를 하나의 모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장점은 있으나, 범죄라는 사회적 행위를 결국에는 심리적 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회화에 의한 내적통제를 중시하는 자아통제이론과는 달리, 외적 통제, 그 중에서도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처벌을 범죄억제의 요인으로 강조하는 이론으로 억제이론이 있다. 이것은 통제이론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통제이론이 넓은 의미의 통제를 강조하는데 반해 억제이론은 정부기관에 의한 좁은 의미의 공식적 처벌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범죄를 향해 지향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점, 따라서 범죄는 아주 일상적인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매우 유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억제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의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인 “처벌은 행동을 억제한다”는 명제를 그대로 범죄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합리적 선택이론은 앞의 명제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명제인 “보상은 행동을 촉진한다”는 명제를 함께 적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의 기본 가정과 내용은 매우 유사하며, 다만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은 둘 다 인간이 범죄행동에서도 매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신고전파의 입장을 이어 받았으며, 다만 억제이론은 보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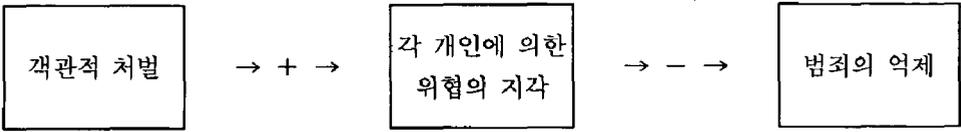
데 반해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이론은 매우 비슷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대부분 높은 추상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특히 설명하려는 사회현상이 이질적이고 복잡할 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의 경향은 흔히 구체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간능력의 한계나 사회현상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국면이나 조건적 상황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단순히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고전적 억제이론의 전통은 현대에 와서 몇 가지 조건적 상황을 도입하거나 보다 정교한 형태를 띠며 다음의 몇 가지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첫째는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인 처벌의 효과를 세분화려는 경향으로, 특히 처벌의 세 가지 차원(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의 효과가 과연 독립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부가적 모형, additive model), 아니면 각각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상호작용 모형, interactive model)를 주로 다루고 있다.

둘째는 처벌의 효과는 각각의 범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죄에 따라 나누어서 연구하려는 경향으로, 이것은 다시 처벌의 효과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와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과 처벌의 효과는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 나타난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Ross et al, 1982; Homel, 1988; Kankide & Leone, 1992; Sherman & Berk, 1984)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처벌의 주관적 수준과 객관적 수준의 문제이다. 즉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과정이 <그림 2-1>과 같은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벌이 바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의한 위협의 지각을 통해서 범죄가 억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론적 진술



(그림 2-1) 억제이론의 인과관계구조

은 “각 개인에 의해 지각된 처벌의 위협은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중요한 발전에 부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경향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다 고전적인 모형에 충실하려는 경제학적인 설명모형으로서 이미 언급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에서 나타난 인과관계 설정의 문제점을 종단적 설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전의 억제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근본적인 연구설계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종래의 억제이론이 범죄행동을 단순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했는데 반해 이 이론은 보상이나 이익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원래의 고전적 논의의 함의는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비용이 더 클 때 범죄는 억제된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상의 측면은 상당기간 무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상당수의 범죄에 있어 물질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의 보상(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즉 표출적 범죄가 많다는 점과, 둘째, 범죄로 인한 보상이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반면 처벌의 측면은 정책적으로 다소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전면에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범죄를 보다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경향과 함께, 특히 보상(이익)의 측면이 물질적으로 매우 명확하고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계획의 과정을 거치는 재산범죄의 경우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모형을 도입하려는 연구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Holzman, 1982; Cochran & Chamlin, 1992). 예를 들면 Cochran과 Chamlin(1992)은 강도, 침입절도, 단순절도, 차량절도와 같

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이익극대화(profit-maximization) 명제를 검증하였는데, 범죄에 의한 이익은 확실하지 않고,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 따라 다르며,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불확실할 때(예를 들면 단순절도)는 이익/비용함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이 확실할 때(예를 들어 침입절도, 강도, 차량절도와 같은 범죄)는 이익/비용함수는 범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약물범죄에 의한 수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비용/보상함수의 범죄억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약물범죄나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수용형을 과하더라도 그 이해득실을 따져보아 수용형의 복역이라고 하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출소 후 그 범죄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용형의 부과가 전혀 범죄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수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 및 조직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동기가 되는 수익자체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범죄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범죄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수익박탈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영호, 1993).

이와 같이 범죄발생에 대한 합리적 선택모형은 범죄의 성격이 도구적일 때, 그리고 범죄에 의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우 확실하고 큰 경우에 매우 적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재산범죄와 같이 범죄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도구적인 측면이 많고 사전계획의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경우 강력범죄에 비해 억제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베커(Becker)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사람들은 기본적 동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비용에 대한 생각에서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범죄학은 이러한 경제학적 견해의 도움을 받게 되면, 범죄는 훨씬 일반적

이론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차별접촉이나 아노미와 같은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행위의 틀 내에서 범죄가 설명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Gould et al., 1986).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요한 가정은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범죄라는 행동도 어떤 특정의 유전자나 특이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범하게 되는 특수한 행동이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사람도 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 범죄자는 어떤 범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손실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봄으로써 손실보다 보상이 크다고 생각될 때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여, 범죄를 특정의 성향을 가진 인간의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서나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범죄행동에 대한 상황적 이해는 내적 통제를 강조하는 자아통제이론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범죄경력과 전문화연구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끌게 된 범죄경력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전과를 가진 경력범죄자들에 대한 많은 구체적,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재범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흥미있는 쟁점들을 만들어 냈으며, 특히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를 주로 범하는 경력범죄자들의 범죄패턴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경력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주로 도구적 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재산범의 재범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범죄경력 연구의 초기에는 일련의 동년배집단 연구(Wolfgang et al, 1972; Tracy et al., 1985; Shannon, 1988)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나타난 공통적인 결론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범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전체 범죄의 반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된 정책이 선택적 무력화전략¹⁾이며, 이것은 만성적 범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상당기간을 감금시켜 범죄능력을 물리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80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이나 얼마전 미국의 한 주에서 입안된 삼진법(three strike-out law)²⁾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범죄학적 연구성과는 형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된 많은 경험적 쟁점과 새로운 개념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개념들 중 중요한 것으로, 범죄경력(criminal career)이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탐지가 가능한 범죄율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종적인 연속을 말한다.³⁾ 따라서 한 극단에는 범죄를 한번만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극단에는 오랜 기간동안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중범죄를 범하는 경력 범죄자(career criminals)들이 있다. 이 경력(career)이란 용어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 그의 범죄행동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이 생애 동안 시작(onset 또는 initiation)과 끝(dropout 또는 termination), 그리고 지속(career length)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용어들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람다(lambda), 확산도(prevalence, 또는 participation)와 빈도(frequency)와

1) 이에 비해 집합적 무력화 전략은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따라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따라서 집합적 무력화 전략하에서는 유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유사한 형을 받게 된다(Visher, 1991, pp.467-468).

2) 이 법은 세 번 이상 흉악범죄를 범한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따라서 Chaiken & Chaiken(1984)의 횡적인 범죄유형의 분류는 일단 제외되며 논외로 한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Blumstein et al., 1988, pp.2-4).⁴⁾ 이러한 개념들은 이후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Visher는 경력범죄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쟁점들을 크게 나누어, 첫째, 개인별 범죄빈도율(individual frequency rate, or lambda), 둘째,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유형의 조합, 셋째, 범죄경력의 길이, 넷째, 범죄적 행동에로의 진입연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Visher, 1991, p.461). 이 중 이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연구의 자료의 성격상 범죄경력의 길이와 진입연령, 그리고 범죄의 전문화가설 등에 한정될 것이다.

먼저 전문화가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일반적인 믿음이 범죄자가 범죄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반해, Rand Study⁵⁾는 많은 범죄자들이 동종범죄자(specialists)라기 보다는 다종범죄자(generalists)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재소자들 중 단지 20%의 재소자들만이 수감되기전 2년동안 단지 한 가지 범죄만을 한 전문가라는 것이다(Visher, 1991, p.463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화가설을 부정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의 종단적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기소된 153명의 남성범죄자의 약 1/3(50명)이 강력범죄로 기소되었고, 이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총 85건이었던 반해(1명당 평균 1.7건), 이들은 동시에 263건의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1명당 평균 5.3건). 이 50명의 강력범죄자들 중 강력범죄만 저지른 사람은 단 7명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력범

4) 여기서 확산도(prevalence)는 어떤 주어진 시간에 활동가능한 범죄자의 인구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구중에서 범죄자가 얼마나 퍼져있는가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빈도(frequency)는 활동중인 범죄자 하위집단이 범하는 범죄의 연간 평균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범죄자들의 범죄활동의 강도 또는 범죄활동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람다(Lambda)란 개인적 범죄율(individual crime rate)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정 기간동안의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빈도를 나타낸다. 또한 한 사회의 범죄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적률(aggregate rate)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범죄량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한 사회의 범죄율의 척도가 되며 다른 사회와의 비교에 좋은 지표가 된다

5) Chaiken & Chaiken의 1982년 연구

의 경우 강력범죄로 전문화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Farrington, 1992, p.532). 그러나 Cohen은 청소년의 경우 전문화의 경향이 매우 약하나, 성인범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화의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성인범죄자의 전문화가 두드러지는 이유를 그들이 조직적 범죄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Cohen의 연구결과에서 독특한 것은 특정한 범죄유형 보다는 어떤 범죄의 집락(cluster)에서의 전문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는 재산범죄 보다는 다른 강력범죄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Visher, 1991, pp.463-464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의 한 연구(Kempf, 1987)는 그 동안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화 가설의 기각은 시기상조이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의 상당부분은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법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선된 그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1958년의 필라델피아 동년배 집단을 분석하여,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재산범에 있어서 강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국내의 연구로서, 김준호·이순래(1995)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전이해 가는 과정에서 범죄의 전문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폭력범죄를 저지른 51.5%의 범죄자가 다음 범죄에서 다시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고, 재산범의 54.2%가 다시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강도, 강간, 폭행, 협박, 절도, 사기, 약물, 교통, 기타의 9개의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 폭행과 절도범죄에서 상당한 전문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폭력범죄로 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연구한 이병기·류철원(1995)의 연구는 절도와 폭력, 사기범죄에 있어서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절도와 폭력의 경우 서로 별다른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이횟수가 늘어갈수록 전문화가 뚜렷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꾸로 모든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나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화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쉽고, 성인이나 각각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전문화의 결론을 산출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에 따라서도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쉬운데, 전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주로 쓰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수형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여기서 첫 번째 범죄는 나무의 가장 큰 줄기를 의미하고, 두번째 범죄는 처음으로 분기되어진 다음의 줄기를 의미하는 식으로 계속 그림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의 여러 범죄자들의 순차적 발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백분을 수준의 자료밖에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의 방법은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여러 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순수한 무작위 과정인 마르코프과정과 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의 전이과정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전체적인 전문화의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mith 등(Smith et al., 1984)에 의하면, 전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할 경우, 분석의 수준은 각각의 경력이 아니고 전체적인 범죄경력들 자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분할표의 세로와 가로에 각각 n 번째 범죄와 $n+1$ 번째 범죄를 배치한 2차원 분할표를 여러개 제시하여 전문화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문화를 나타내는 셀이 대각선상에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쉽게 전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의 범죄자가 거쳐간 경로를 전이표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전문화 가설은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동안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단 청소년 보다는 성인범죄자의 경우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재산범과 같은 특정범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불완전한 합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일련의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범죄적 행동이 특이하거나 기형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매우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일관되게 범죄를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동과 동일한 설명들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범죄를 범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가에 따라 범죄는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러한 가정은 여러가지 범죄들 중에서도 특히 도구적 성향이 강한 범죄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설명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밀한 계획하에 절도나 사기범죄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범죄자의 어릴적 부터의 어떤 성향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처벌과 보상의 함수관계로 대표되는 어떠한 상황에 따른 행위자의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설명도식에 의해 일반적으로 도구적 범죄로 여겨지는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재범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3 장 재산범의 재범추이(1972-1992)

이 장에서는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재산범죄의 재범자의 분포 및 추이를 살펴보고 이것을 다른 범죄, 특히 강력범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의 재범상황 및 추이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된 통계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분석”이 이용되었다.

먼저 재범의 발생상태를 알아보기 전에 1993년에 경찰청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3-1〉), 전체범죄의 경우 20세 이하의 피의자는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며,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26세 이후 40세 사이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31세부터 35세 사이의 피의자가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력범과 재산범을 비교해 본 결과, 범죄자의 연령 분포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의 경우 16세에서 20세 사이의 피의자가 무려 34.1%에 이르고 21세에서 25세 사이가 거의 20%에 이르고 있는 반면, 재산범의 경우 31세에서 35세 사이의 피의자가 전체의 17.6%로 가장 많고 30대의 피의자가 약 32%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 분포에서도 강력범의 경우 10대 후반이 지나고 나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산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절도의 경우 20세 미만이 과반수를 넘는 53.4%를 차지하는 반면, 사기와 횡령의 경우 31세에서 35세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것은 특히 배임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40대 이상이 무려 53.1%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배임이나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는 주로 연령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범죄유형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연령분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연령에 따른 분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범죄경력 패턴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횡령이나 배임

의 경우 왜 높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인지, 이것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주로 범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횡령이나 배임범죄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런 범죄들을 오래 전 부터 전문화해 온 것인지, 일반적으로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학력이 높은 것은 이런 범죄에 대한 기회가 고학력자들에게 주로 열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연령층에서 이런 범죄를 선호하는 것인지 등등의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이나 재범패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 피의자 연령별 분포(1993년)

단위 : 명(%)

	계	15세미만	16-20	21-25	26-30	31-35	36-40	40-50	51이상
총 범 죄	871,755 (100.0)	18,131 (2.1)	74,937 (8.6)	106,644 (12.2)	145,395 (16.7)	169,360 (19.4)	131,782 (15.1)	145,931 (16.7)	78,945 (9.1)
강 력 범	14,527 (100.0)	760 (5.2)	4,954 (34.1)	2,745 (18.9)	2,079 (14.3)	1,649 (11.4)	996 (6.9)	867 (6.0)	477 (3.3)
재 산 범	160,948 (100.0)	10,927 (6.8)	18,579 (11.5)	14,367 (8.9)	21,126 (13.1)	28,256 (17.6)	23,373 (14.5)	28,253 (17.6)	16,067 (10.0)
절 도	51,598 (100.0)	10,783 (20.9)	16,748 (32.5)	6,772 (13.1)	5,079 (9.8)	4,298 (8.3)	2,759 (5.3)	2,939 (5.7)	2,220 (4.3)
사 기	93,127 (100.0)	123 (0.1)	1,668 (1.8)	6,871 (7.4)	13,989 (15.0)	20,556 (22.1)	17,429 (18.7)	21,169 (22.7)	11,322 (12.2)
횡 령	12,400 (100.0)	11 (0.1)	149 (1.2)	659 (5.3)	1,770 (14.3)	2,717 (21.9)	2,453 (19.8)	2,986 (24.1)	1,655 (13.3)
배 임	3,823 (100.0)	10 (0.3)	14 (0.4)	65 (1.7)	288 (7.5)	685 (17.9)	732 (19.1)	1,159 (30.3)	870 (22.8)

※ 강력범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재산범의 경우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의 네 가지 주요 재산범을 포함.

(출처)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다음으로 전과가 있는 피의자들만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3-2〉), 앞 의 전체 피의자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는 것 외 에는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다만 절도의 경우 전체피의자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32.5%가 모여있는데 비해 전과가 있는 절도피의자의 경우 <표 3-1>에 비해 16세에서 20세 사이의 비율이 25.4%로 다소 낮기는 했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기와 횡령, 배임범죄의 경우 절도나 강력범에 비해 특히 36세 이상의 이상의 높은 연령을 가진 범죄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과피의자 연령별 분포(1993)

단위 : 명(%)

	계	15세미만	16-20	21-25	26-30	31-35	36-40	40-50	51이상
총 범 죄	348,173 (100.0)	2,768 (0.8)	17,513 (5.0)	32,505 (9.3)	55,224 (15.9)	73,539 (21.1)	61,139 (17.6)	70,422 (20.2)	35,043 (10.1)
강 령 범	6,433 (100.0)	184 (2.9)	1,577 (24.5)	1,328 (20.6)	1,124 (17.5)	953 (14.8)	554 (8.6)	483 (7.5)	230 (3.6)
재 산 범	75,692 (100.0)	1,622 (2.1)	4,732 (6.3)	5,373 (7.1)	10,313 (13.6)	15,311 (20.2)	13,459 (17.8)	16,439 (21.7)	8,443 (11.2)
절 도	17,105 (100.0)	1,590 (9.3)	4,352 (25.4)	2,720 (15.9)	2,406 (14.1)	2,218 (13.0)	1,437 (8.4)	1,508 (8.8)	874 (5.1)
사 기	49,834 (100.0)	28 (0.1)	330 (0.7)	2,352 (4.7)	6,836 (13.7)	11,247 (22.6)	10,174 (20.4)	12,567 (25.2)	6,300 (12.6)
횡 령	6,853 (100.0)	1 (0.0)	48 (0.7)	275 (4.0)	937 (13.7)	1,528 (22.3)	1,471 (21.5)	1,744 (25.4)	849 (12.4)
배 임	1,900 (100.0)	3 (0.2)	2 (0.1)	26 (1.4)	134 (7.1)	318 (16.7)	377 (19.8)	620 (32.6)	420 (22.1)

※ 강력범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재산범의 경우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의 네 가지 주요 재산범을 포함

(출처)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그런데 각 범죄별로의 전과자의 분포를 보면(<표 3-3>), 절도의 전과피의자 비율은 33.2%로 4개 주요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낮았고, 사기의 전과피의자 비율은 53.5%, 횡령의 전과피의자 비율이 55.3%, 배임의 전과피의자 비율이 49.7%로 이들 3개 범죄가 대체로 전과피의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기의 경우 9범 이상의 범죄자가 무려 8.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적 자료들은 특정연도의 재산범의 연령별 분포나 재범자

〈표 3-3〉 93년 피의자 전과별 분포

단위 : 명(%)

	계	전과없음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총 범 죄	871,755 (100.0)	523,582 (60.1)	348,173 (39.9)	133,377 (38.3)	73,301 (21.1)	45,601 (13.1)	29,206 (8.4)	19,588 (5.6)	13,329 (3.8)	9,221 (2.6)	6,592 (1.9)	17,958 (5.2)
4개강력범	14,527 (100.0)	8,094 (55.7)	6,433 (44.3)	2,461 (38.3)	1,379 (21.4)	839 (13.0)	538 (8.4)	344 (5.3)	237 (3.7)	187 (2.9)	125 (1.9)	323 (5.0)
4개재산범	160,948 (100.0)	85,256 (53.0)	75,692 (47.0)	24,038 (31.8)	15,328 (20.3)	10,477 (13.8)	7,349 (9.7)	5,199 (6.9)	3,589 (4.7)	2,534 (3.3)	1,872 (2.5)	5,351 (7.1)
절 도	51,598 (100.0)	34,493 (66.8)	1,710 (33.2)	71,143 (41.6)	663 (21.4)	2,232 (13.0)	1,337 (7.8)	874 (5.1)	565 (3.3)	400 (2.3)	279 (91.6)	641 (3.7)
사 기	93,127 (100.0)	43,293 (46.5)	49,834 (53.5)	14,282 (28.7)	9,927 (19.9)	6,983 (14.0)	5,128 (10.3)	3,683 (7.4)	2,598 (5.2)	1,845 (3.7)	1,368 (2.7)	4,065 (8.2)
횡 령	12,400 (100.0)	5,547 (44.7)	6,853 (55.3)	2,028 (29.6)	1,365 (19.9)	1,017 (14.8)	689 (10.1)	506 (7.4)	333 (4.9)	224 (3.3)	178 (2.6)	513 (7.5)
배 임	3,823 (100.0)	1,923 (50.3)	1,900 (49.7)	614 (32.3)	373 (19.6)	245 (12.9)	195 (10.3)	136 (7.2)	93 (4.9)	65 (3.4)	47 (2.5)	132 (6.9)

※ 강력범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재산범의 경우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의 네 가지 주요 재산범을 포함
(출처)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들의 비율을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좀더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범의 발생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재범을 보다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우선 재범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1972년 이후의 재산범의 재범자 비율과 강력범의 재범자 비율의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표 3-4〉).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두 경우 모두, 과거에는 재범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2년에 들어서는 재산범과 강력범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6년을 기점으로 강력범의 재범자 비율이 재산범의 재범자 비율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강력범의 재범자 비율이 더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4〉 재산범과 강력범의 재범추이 비교

단위 : 명(%)

연 도	재 산 범		강 력 범	
	범죄자수	전과자 비율	범죄자수	전과자 비율
1972	110,706	15,567(14.1)	26,792	3,096(11.6)
1973	105,940	17,450(16.5)	24,896	3,349(13.5)
1974	100,243	17,274(17.2)	23,922	3,739(15.6)
1975	112,611	20,954(18.6)	29,929	5,035(16.8)
1976	151,689	27,617(18.2)	34,418	6,762(19.6)
1977	135,629	26,376(19.4)	36,221	8,031(22.2)
1978	114,357	26,008(22.7)	34,140	8,832(25.9)
1979	112,373	27,611(24.6)	34,488	9,546(27.7)
1980	151,947	35,000(23.0)	38,914	10,969(28.2)
1981	190,142	47,474(25.0)	43,993	13,257(30.1)
1982	204,664	60,020(29.3)	48,427	16,065(33.2)
1983	191,792	63,594(33.2)	46,446	17,205(37.0)
1984	202,332	73,861(36.5)	46,781	18,504(39.6)
1985	193,315	75,154(38.9)	46,084	18,903(41.0)
1986	190,172	76,051(40.0)	45,675	19,225(42.1)
1987	177,057	73,736(41.6)	44,885	20,081(44.7)
1988	160,657	70,612(44.0)	45,215	20,878(46.2)
1989	158,092	71,180(45.0)	49,398	23,139(46.8)
1990	155,680	71,342(45.8)	50,419	23,706(47.0)
1991	173,288	82,880(47.8)	47,087	23,917(50.8)
1992	205,277	105,205(51.3)	45,574	24,141(53.0)

※ 재산범과 강력범 모두 형법위반 범죄만이 집계된 것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다음으로 재산범만의 전과별 추이를 살펴보면(〈표 3-5〉), 전과1범(본범 포함 2범)에서 전과 4범(본범 포함 5범)까지의 재범자 비율이 1972년에서 1992년 사이의 20여년 동안 각각 5%, 7.5%, 5.9%, 4.7% 증가했는데 반해서, 전과 5범 이상자의 경우 무려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재산범의 재범자 비율의 증가(37.2%)는 대부분 다수의 전과를 가진 강력범죄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범죄유형별로 보면(〈표 3-6〉), 절도범죄의 재범자 비율은 1972년에

〈표 3-5〉 연도별 재산범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					5범이상
			소 계	1범	2범	3범	4범	
1972	110,706 (100.0)	95,139 (85.9)	15,567 —	9,584 (8.7)	2,805 (2.5)	1,415 (1.3)	678 (0.6)	1,085 (1.0)
1973	108,940 (100.0)	91,490 (84.0)	17,450 —	10,895 (10.3)	3,170 (3.0)	1,480 (1.4)	698 (0.7)	1,207 (1.1)
1974	100,243 (100.0)	82,969 (82.8)	17,274 —	10,840 (10.8)	3,162 (3.2)	1,481 (1.5)	685 (0.7)	1,106 (1.1)
1975	112,611 (100.0)	91,657 (81.4)	20,954 —	12,789 (11.4)	3,991 (3.5)	1,852 (1.6)	892 (0.8)	1,430 (1.3)
1976	151,689 (100.0)	124,072 (81.8)	27,617 —	16,793 (11.1)	5,344 (3.5)	2,469 (1.6)	1,212 (0.8)	1,799 (1.2)
1977	135,629 (100.0)	109,253 (80.6)	26,376 —	15,414 (11.4)	5,471 (4.0)	2,507 (1.8)	1,181 (0.9)	1,803 (1.3)
1978	114,357 (100.0)	88,259 (77.2)	26,008 —	14,206 (12.4)	5,389 (4.7)	2,734 (2.4)	1,436 (1.3)	2,243 (2.0)
1979	112,373 (100.0)	84,762 (75.4)	27,611 —	13,995 (12.5)	5,982 (5.3)	3,191 (2.8)	1,704 (1.5)	2,739 (2.4)
1980	151,947 (100.0)	116,947 (77.0)	35,000 —	17,172 (11.3)	7,596 (5.0)	4,109 (2.7)	2,257 (1.5)	3,866 (2.5)
1981	190,142 (100.0)	142,668 (75.0)	47,474 —	22,876 (12.0)	10,949 (5.8)	5,580 (2.9)	3,128 (1.6)	4,941 (2.6)
1982	204,664 (100.0)	144,644 (70.7)	60,020 —	26,479 (12.9)	13,562 (6.6)	7,886 (3.9)	4,629 (2.3)	7,464 (3.6)
1983	191,792 (100.0)	128,198 (66.8)	63,594 —	26,200 (13.7)	14,405 (7.5)	8,883 (4.6)	5,262 (2.7)	8,844 (4.6)
1984	202,332 (100.0)	128,471 (63.5)	73,861 —	27,902 (13.8)	16,788 (8.3)	10,349 (5.1)	6,620 (3.3)	12,202 (6.0)
1985	193,315 (100.0)	118,161 (61.1)	75,154 —	26,957 (13.9)	16,639 (8.6)	10,595 (5.5)	7,131 (3.7)	13,832 (7.2)
1986	190,172 (100.0)	114,121 (60.0)	76,051 —	25,998 (13.7)	16,542 (8.7)	10,846 (5.7)	7,222 (3.8)	15,443 (8.1)
1987	177,057 (100.0)	104,321 (58.9)	73,736 —	24,101 (13.6)	15,464 (8.7)	10,634 (6.0)	7,215 (4.1)	16,322 (9.2)
1988	160,657 (100.0)	90,045 (56.0)	70,612 —	22,094 (13.8)	14,802 (9.2)	10,191 (6.3)	7,019 (4.4)	16,506 (10.3)
1989	158,092 (100.0)	86,912 (55.0)	71,180 —	21,587 (13.7)	14,165 (9.0)	10,118 (6.4)	7,362 (4.7)	17,948 (11.4)
1990	155,680 (100.0)	84,338 (54.2)	71,342 —	20,655 (13.3)	13,941 (9.0)	10,153 (6.5)	7,220 (4.6)	19,373 (12.4)
1991	173,288 (100.0)	90,408 (52.2)	82,880 —	23,081 (13.3)	16,039 (9.3)	11,952 (6.9)	8,500 (4.9)	23,308 (13.5)
1992	205,277 (100.0)	100,072 (48.7)	105,205 —	28,187 (13.7)	20,442 (10.0)	14,876 (7.2)	10,914 (5.3)	30,786 (15.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8.1%에 불과하던 것이 20여년 후인 1992년에는 35%로 증가하였고, 재산범 전체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과 5범 이상의 경력범죄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그러나 이는 이어서 살펴보게 될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의 경우 (〈표 3-7〉) 재범자 비율이 1972년의 경우 12.7%에 불과하다가 20여년 후인 1992년에는 무려 56.3%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과 1범의 경우 8.5%에서 13.6%로 5.1% 증가했는데 비해서, 전과 5범 이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무려 17.4%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재산범죄 중에서도 횡령범죄와 함께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총 범죄자수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졌다.

그리고 횡령범죄는 1972년 재범자 비율이 9.4%에서 1992년에는 57.4%로 크게 높아졌고, 5범 이상의 경우도 그 비율이 15.6%나 증가하였다(〈표 3-8〉). 그외 배임의 경우 8.6%에서 51.7%로, 손괴의 경우 10.4%에서 55.8%로, 그리고 장물범죄의 경우 7.4%에서 42.2%로 각각 재범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공통적으로 전과 5범 이상의 경력범죄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배임, 손괴, 장물범죄에 관한 상세한 추이는 부록의 표를 참조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연령별로 전체 범죄자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26세에서 40세 사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범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절도의 경우 20세 미만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사기와 횡령은 31세에서 35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배임의 경우 40대 이상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연령의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산범과 강력범 모두 상당히 낮은 재범자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재범자 비율이 증가해 이미 1992년 현재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따라서 증가된 범죄건수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재범자의 높은 증가율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 절도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					
			소 계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1972	53,647 (100.0)	43,954 (81.9)	9,693 (18.1)	5,560 (10.4)	1,798 (3.4)	1,006 (1.9)	483 (0.9)	846 (1.6)
1973	52,747 (100.0)	42,644 (80.8)	10,103 (19.2)	6,005 (11.4)	1,822 (3.5)	946 (1.8)	457 (0.9)	873 (1.7)
1974	49,988 (100.0)	40,318 (80.7)	9,670 (19.3)	5,825 (11.7)	1,782 (3.6)	893 (1.8)	432 (0.9)	738 (1.5)
1975	54,441 (100.0)	43,542 (80.0)	10,899 (20.0)	6,476 (11.9)	2,080 (3.8)	971 (1.8)	496 (0.9)	876 (1.6)
1976	74,653 (100.0)	61,008 (81.7)	13,645 (18.3)	8,287 (11.1)	2,580 (3.5)	1,174 (1.6)	620 (0.8)	984 (1.3)
1977	65,908 (100.0)	53,841 (81.7)	12,067 (18.3)	7,183 (10.9)	2,419 (3.7)	1,072 (1.6)	533 (0.8)	860 (1.3)
1978	52,156 (100.0)	41,168 (78.9)	10,988 (21.1)	6,107 (11.7)	2,210 (4.2)	1,134 (2.2)	551 (1.1)	986 (1.9)
1979	48,598 (100.0)	37,841 (77.9)	10,757 (22.1)	5,506 (11.3)	2,185 (4.5)	1,259 (2.6)	632 (1.3)	1,175 (2.4)
1980	63,358 (100.0)	49,879 (78.7)	13,479 (21.3)	6,528 (10.3)	2,829 (4.5)	1,265 (2.0)	860 (1.4)	1,997 (3.2)
1981	69,124 (100.0)	54,260 (78.5)	14,854 (21.5)	7,622 (11.0)	3,274 (4.7)	1,626 (2.4)	950 (1.4)	1,382 (2.0)
1982	78,032 (100.0)	59,522 (76.3)	18,510 (23.7)	9,145 (11.7)	4,134 (5.3)	2,183 (2.8)	1,242 (1.6)	1,806 (2.3)
1983	72,505 (100.0)	53,038 (73.2)	19,467 (26.8)	9,119 (12.6)	4,399 (6.1)	2,559 (3.5)	1,366 (1.9)	2,024 (2.8)
1984	67,992 (100.0)	47,527 (69.9)	20,465 (30.1)	8,768 (12.9)	4,762 (7.0)	2,720 (4.0)	1,655 (2.4)	2,560 (3.8)
1985	67,527 (100.0)	45,794 (67.8)	21,733 (32.2)	8,828 (13.1)	4,936 (7.3)	2,986 (4.4)	1,899 (2.8)	3,084 (4.6)
1986	68,365 (100.0)	46,276 (67.7)	22,089 (32.3)	8,846 (12.9)	4,974 (7.3)	3,051 (4.5)	1,923 (2.8)	3,295 (4.8)
1987	62,328 (100.0)	41,763 (67.0)	20,565 (33.0)	7,921 (12.7)	4,447 (7.1)	2,897 (4.6)	1,865 (3.0)	3,435 (5.5)
1988	57,396 (100.0)	37,538 (65.4)	19,858 (34.6)	7,317 (12.7)	4,338 (7.6)	2,865 (5.0)	1,846 (3.2)	3,492 (6.1)
1989	52,849 (100.0)	34,914 (66.1)	17,935 (33.9)	6,507 (12.3)	3,706 (7.0)	2,401 (4.5)	1,727 (3.3)	3,594 (6.8)
1990	47,783 (100.0)	31,638 (66.2)	16,145 (33.8)	5,689 (11.9)	3,374 (7.1)	2,210 (4.6)	1,469 (3.1)	3,403 (7.1)
1991	46,185 (100.0)	30,675 (66.4)	15,510 (33.6)	5,565 (12.0)	3,153 (6.8)	2,153 (4.7)	1,439 (3.1)	3,200 (6.9)
1992	46,828 (100.0)	30,421 (65.0)	16,407 (35.0)	5,905 (12.6)	3,404 (7.3)	2,117 (4.5)	1,486 (3.2)	3,495 (7.5)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3-7〉 사기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					
			소 계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1972	24,505 (100.0)	21,399 (87.3)	3,106 (12.7)	2,086 (8.5)	533 (2.2)	245 (1.0)	111 (0.5)	131 (0.5)
1973	24,738 (100.0)	20,790 (84.0)	3,948 (16.0)	2,550 (10.3)	763 (3.1)	307 (1.2)	146 (0.6)	182 (0.7)
1974	21,008 (100.0)	16,993 (80.9)	4,015 (19.1)	2,564 (12.2)	761 (3.6)	334 (1.6)	149 (0.7)	207 (1.0)
1975	25,651 (100.0)	20,210 (78.8)	5,441 (21.2)	3,300 (12.9)	1,052 (4.1)	526 (2.1)	242 (0.9)	321 (1.3)
1976	36,146 (100.0)	28,561 (79.0)	7,585 (20.1)	4,417 (12.2)	1,540 (4.3)	754 (2.1)	370 (1.0)	504 (1.4)
1977	35,196 (100.0)	27,443 (78.0)	7,753 (22.0)	4,376 (12.4)	1,705 (4.8)	814 (2.3)	354 (1.0)	504 (1.4)
1978	32,237 (100.0)	23,920 (74.2)	8,317 (25.8)	4,306 (13.4)	1,805 (5.6)	920 (2.9)	504 (1.6)	782 (2.4)
1979	35,665 (100.0)	25,984 (72.9)	9,681 (27.1)	4,702 (13.2)	2,181 (6.1)	1,156 (3.2)	672 (1.9)	970 (2.7)
1980	53,607 (100.0)	40,447 (75.5)	13,160 (24.5)	6,324 (11.8)	2,904 (5.4)	1,632 (3.0)	915 (1.7)	1,385 (2.6)
1981	75,962 (100.0)	55,236 (72.7)	17,585 (27.3)	9,394 (12.4)	4,863 (6.4)	2,597 (3.4)	1,453 (1.9)	(722) (-1.0)
1982	80,716 (100.0)	53,985 (66.9)	26,731 (33.1)	10,651 (13.2)	6,077 (7.5)	3,781 (4.7)	2,289 (2.8)	3,933 (4.9)
1983	78,859 (100.0)	49,391 (62.6)	29,468 (37.4)	10,942 (13.9)	6,621 (8.4)	4,298 (5.5)	2,750 (3.5)	4,857 (6.2)
1984	91,557 (100.0)	55,107 (60.2)	36,450 (39.8)	12,462 (13.6)	8,074 (8.8)	5,355 (5.8)	3,504 (3.8)	7,055 (7.7)
1985	85,227 (100.0)	48,986 (57.5)	36,241 (42.5)	11,743 (13.8)	7,775 (9.1)	5,240 (6.1)	3,694 (4.3)	7,789 (9.1)
1986	82,052 (100.0)	45,232 (55.1)	36,820 (44.9)	11,066 (13.5)	7,665 (9.3)	5,322 (6.5)	3,743 (4.6)	9,024 (11.0)
1987	78,752 (100.0)	41,961 (53.3)	36,791 (46.7)	10,527 (13.4)	7,478 (9.5)	5,384 (6.8)	3,770 (4.8)	9,632 (12.2)
1988	70,395 (100.0)	35,346 (50.2)	35,049 (49.8)	9,615 (13.7)	7,137 (10.1)	5,169 (7.3)	3,638 (5.2)	9,490 (13.5)
1989	72,219 (100.0)	35,277 (48.8)	36,942 (51.2)	9,825 (13.6)	7,087 (9.8)	5,275 (7.3)	4,093 (5.7)	10,662 (14.8)
1990	75,412 (100.0)	36,258 (48.1)	39,154 (51.9)	10,088 (13.4)	7,284 (9.7)	5,670 (7.5)	4,180 (5.5)	11,932 (15.8)
1991	91,981 (100.0)	42,775 (46.5)	49,406 (53.5)	12,372 (13.5)	9,178 (10.0)	7,178 (7.8)	5,237 (5.7)	15,441 (16.8)
1992	120,222 (100.0)	52,557 (43.7)	67,670 (56.3)	16,360 (13.6)	12,828 (10.7)	9,677 (8.0)	7,289 (6.1)	21,516 (17.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3-8〉 횡령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					5범이상
			소 계	1범	2범	3범	4범	
1972	11,828 (100.0)	10,718 (90.6)	1,110 (9.4)	804 (6.8)	189 (1.6)	60 (0.5)	24 (0.2)	33 (0.3)
1973	11,080 (100.0)	9,662 (87.2)	1,418 (12.8)	969 (8.7)	257 (2.3)	97 (0.9)	39 (0.4)	56 (0.5)
1974	9,558 (100.0)	8,083 (84.6)	1,475 (15.4)	1,011 (10.6)	254 (2.7)	111 (1.2)	42 (0.4)	57 (0.6)
1975	11,626 (100.0)	9,613 (82.7)	2,013 (17.3)	1,337 (11.5)	354 (3.0)	170 (1.5)	68 (0.6)	84 (0.7)
1976	14,792 (100.0)	12,019 (81.3)	2,773 (18.7)	1,719 (11.6)	580 (3.9)	251 (1.7)	100 (0.7)	123 (0.8)
1977	13,968 (100.0)	10,973 (78.6)	2,995 (21.4)	1,759 (12.6)	640 (4.6)	292 (2.1)	143 (1.0)	161 (1.2)
1978	12,047 (100.0)	8,937 (74.2)	3,110 (25.8)	1,706 (14.2)	677 (5.6)	341 (2.8)	178 (1.5)	208 (1.7)
1979	12,861 (100.0)	9,258 (72.0)	3,603 (28.0)	1,849 (14.4)	849 (6.6)	422 (3.3)	196 (1.5)	287 (2.2)
1980	15,965 (100.0)	11,758 (73.6)	4,207 (26.4)	2,115 (13.2)	943 (5.9)	476 (3.0)	228 (1.4)	445 (2.8)
1981	20,631 (100.0)	14,581 (70.7)	6,050 (29.3)	2,881 (14.0)	1,504 (7.3)	723 (3.5)	386 (1.9)	556 (2.7)
1982	22,106 (100.0)	14,518 (65.7)	7,588 (34.3)	3,373 (15.3)	1,776 (8.0)	987 (4.5)	568 (2.6)	884 (4.0)
1983	21,082 (100.0)	13,098 (62.1)	7,984 (37.9)	3,250 (15.4)	1,861 (8.8)	1,116 (5.3)	656 (3.1)	1,101 (5.2)
1984	24,684 (100.0)	14,474 (58.6)	10,210 (41.4)	3,975 (16.1)	2,434 (9.9)	1,365 (5.5)	901 (3.7)	1,535 (6.2)
1985	24,279 (100.0)	13,636 (56.2)	10,643 (43.8)	3,856 (15.9)	2,384 (9.8)	1,545 (6.4)	1,007 (4.1)	1,851 (7.6)
1986	24,478 (100.0)	13,626 (55.7)	10,882 (44.3)	3,736 (15.3)	2,477 (10.1)	1,615 (6.6)	1,043 (4.3)	2,011 (8.2)
1987	22,750 (100.0)	12,051 (53.0)	10,699 (47.0)	3,619 (15.9)	2,320 (10.2)	1,573 (6.9)	1,041 (4.6)	2,146 (9.4)
1988	20,994 (100.0)	10,721 (51.1)	10,273 (48.9)	3,256 (15.5)	2,146 (10.2)	1,438 (6.8)	1,058 (5.0)	2,375 (11.3)
1989	20,174 (100.0)	10,267 (50.9)	10,607 (49.1)	3,268 (16.2)	2,180 (10.8)	1,631 (8.1)	1,064 (5.3)	2,464 (12.2)
1990	20,779 (100.0)	10,019 (48.2)	10,760 (51.8)	3,173 (15.3)	2,214 (10.7)	1,583 (7.6)	1,084 (5.2)	2,706 (13.0)
1991	22,468 (100.0)	10,419 (46.4)	12,049 (53.6)	3,372 (15.0)	2,520 (11.2)	1,282 (5.7)	1,260 (5.6)	3,615 (16.1)
1992	25,571 (100.0)	10,895 (42.6)	14,676 (57.4)	3,895 (15.2)	2,943 (11.5)	2,249 (8.8)	1,521 (5.9)	4,068 (15.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제 4 장 재범의 원인과 과정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1993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와 연속성을 가지는 과제로서, 앞의 연구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1987년에 출소한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고형량이 출소 후의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는 강력범에 있어서 재범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지적하였으며, 그의 범죄경력관련변수의 효과 및 가석방이 단기적 효과는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그에 이어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고 1987년에 출소한 재산범들을 강력범에 대한 연구와 거의 같은 양식의 조사표에 의해 조사하여 재산범의 재범의 원인과 그들의 범죄경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속성을 가지는 연구이다. 따라서 앞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조사표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전과나 출소후의 범행행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이용하였다.¹⁾

앞의 장에서 언급된 재산범에 대한 이론적 검토작업에서 도출된 우리의 관심사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강력범에 관한 연구의 취지는 형사정책수립의 기초가 되어온 재범예방의 이념을 재검토하는 것이었으며, 과연 강력범에 있어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1987년 출소한 382명의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결과, 이 연구는 강력범에 있어서 선고형량의 재범방지효과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연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최인섭·박철현,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를 참조하길 바란다.

첫째, 과연 선고형량과 같은 처벌의 강도(엄격성)는 재산범에 있어서 재범을 억제하는가?

둘째, 표출적이라 할 수 있는 강력범죄에 비해 도구적인 범죄인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의 효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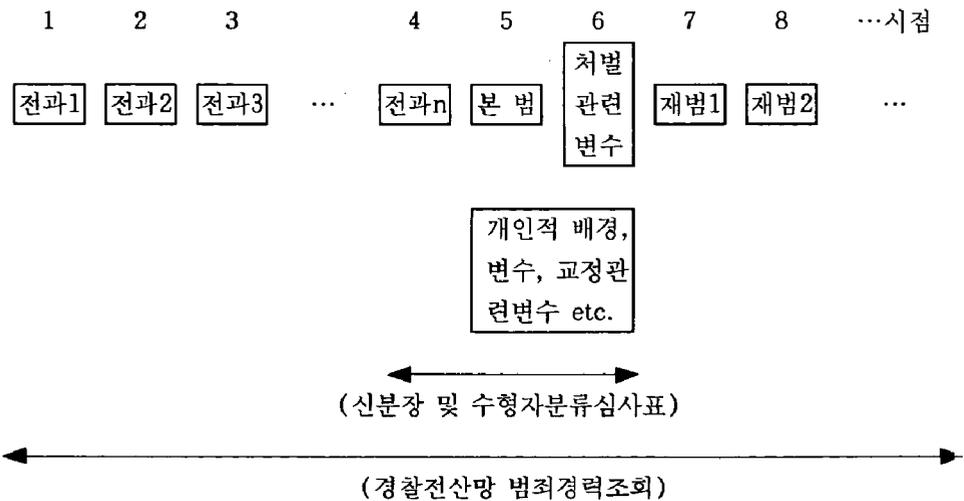
셋째, 또한 이러한 효과가 범죄유형에 따라 다른지, 또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재산범죄에 있어서 손실에 비해 범죄로 인한 이익의 양은 재범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일반적인 범죄자는 주로 언제 범죄경력에 진입하게 되는가?

여섯째, 전문화 경향은 나타나는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인가?

이러한 많은 의문점들은 대부분 시간의 선·후를 가정하고 있는 가설적 진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의 분석을 위해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design)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의 시점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그림 4-1>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의 시점

위의 그림에서 앞에서 언급한 관심사가 모두 연구가설화 된다면, 대부분의 가설은 [시점5]와 [시점7]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범죄경력에 관한 가설은 [시점1] 이후의 모든 시점에 해당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단적 과정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사건사분석이 이용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최인섭·박철현, 1994), 여기서는 기본 모형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Agresti, 1990 참조).

$$\ln \left[\frac{P}{(1-P)} \right] = \beta x$$

여기서, β 는 모수의 행(열)벡터

x 는 설명변수의 열(행)벡터

다음으로 사건사 분석에서 쓰이는 반모수적 방법(semi-parametric method)인 비례적 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의 위험함수($H(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Yamaguchi, 1991 참조).

$$H(t) = H_0(t) \exp[\beta x(t)]$$

여기서, 위험함수란 사건이 시간 t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어졌을 때, 시간 t 에서 사건이 일어날 순간위험율을 말한다(이에 비해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시간 t 이전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말한다). $H_0(t)$ 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t 가 0일 때의 위험함수를 말한다. 또한 여기서 β 는 모수의 벡터이며 X 는 공변인(covariate)의 벡터이다(Yamaguchi, 1991, pp.103-104 참조).

그의 범죄경력에서 전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이행렬을 이용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일단 자료의 전체 내용을 쉽게 제시하는 장

점이 있으며, 이 전이행렬을 이용한 전문화 연구의 최근의 발전은 전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화 계수(Coefficient of Specialization)의 도입은 분할표 분석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²⁾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Farrington(1986)의 전문화계수를 사용하였다.

$$\text{전문화계수} = \frac{\text{관찰치}-\text{기대치}}{\text{열합계}-\text{기대치}}$$

위에서 관찰치와 기대치는 모두 전이표의 대각선 셀의 관찰치와 기대치를 나타낸다. 이 계수의 유용성은 만약 완전한 일반화가 일어난다면 이 계수가 0이 되고, 만약 완전한 전문화가 일어난다면 이 계수가 1이 된다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2. 사용된 변수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7년 이전에 교도소에서 재소하고 있을 당시의 재소자 신분카드와 수형자분류심사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출소 후의 범죄경력조치를 통해 얻어졌다. 이중 수형자분류심사표는 죄질이나 범죄성향의 진전도 등에 따라 분류해서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재소의 초기단계에서 행해지는 조사로서 여기에는 주로 형기나 성장기, 성격검사, 전과, 보호관계등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 있다. 여기에 비해 재소자 신분카드(속칭 신분장)는 재소자관리

2) 전이행렬 분석의 한계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Farrington, 1986, p.225)

- 첫째, 표 자체가 2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 둘째, 보다 자주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전문화의 정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셋째, 어느 한정된 유형의 범죄만을 옮겨다니는 범죄자는 일반화하는 범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넷째, 결과가 사용된 범죄유형의 분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범주의 증가는 일반화를 도출할 가능성이, 범주의 감소는 전문화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해당 재소자의 인적사항이나 본범내용, 신체특징, 교도소에서의 교육이나 활동 등이 간략히 나타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는 어떤 사람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과 처리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사항이 나타나 있다(최인섭·박철현, 1994, p.66 참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지난번의 조사(최인섭·박철현, 1994)에서 사용되었던 자료와 추가된 자료로 나누어진다. 추가된 자료는 주로 처벌과 관련된 자료들로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기 위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신속성의 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범죄의 발생일자’이다. 따라서 지난번의 연구와 비교해서 보강된 사항은 위의 두 가지 자료에 국한된다.

여기서 사용된 변수는 이 세 가지의 자료³⁾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가능한 자료를 각각의 특성이나 시간의 선후에 따라 다시 크게 6가지의 변인군 - 재범, 처벌관련변수, 본범관련변수,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변수, 교정관련변수,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 으로 분류하였다.⁴⁾

가. 재범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재범에 관한 자료는 주로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범죄사실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결과에는 대부분 입건일만 있는 경우가 많고 처분일이나 처분결과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재범을 조작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범의 기준을 처분일(형선고일)로 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입건되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일 때 이것은 모두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용된 재범의 정의는 다소 한계는 있지만, 강력범의

3) 재소자신분카드, 수형자분류심사표, 범죄경력조회

4) 변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은 1994년의 연구(최인섭·박철현)를 참조할 것.

경우, “1987년 출소 후 새로운 범죄로 인하여 1993년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경우(형을 받은 경우는 벌금형 제외)⁵⁾”를 말하고, 재산범의 경우 “1987년 출소 후 새로운 범죄로 인하여 1994년 9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경우(형을 받은 경우는 벌금형 제외)”를 말한다.⁶⁾

나. 처벌관련변수

처벌의 엄격성은 월별로 환산한 선고형량을 각 범죄에 대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처벌의 엄격성(SP)} = \frac{(AS - Mas)}{Sas}$$

여기서, AS : 각 관측치의 선고형량

Mas : 각 범죄별 선고형량의 평균

Sas : 각 범죄별 선고형량의 표준편차

그리고 이 연구에서 처벌의 신속성은 재판의 신속성과 체포의 신속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재판의 신속성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영장이 집행된 날로부터 유죄판결이 선고된 날까지의 기간”이며 일(day)단위로 환산되었다. 그리고 체포의 신속성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체포되기까지의 기간”이며 역시 일단위로 환산되었다.

다음으로 재산범에 국한해서 도입되었던 비용/보상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5) 최근부터 범죄경력조회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조회결과에서 삭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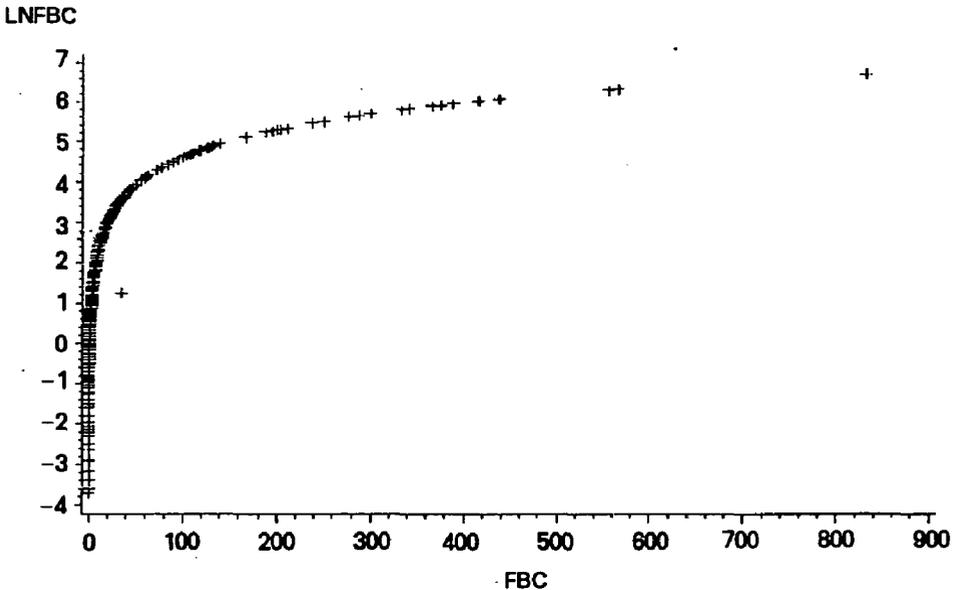
6) 이렇게 다소 강력범과 재산범의 재범의 정의가 다른 것은 범죄경력조회를 각각 다른 시기에 했기 때문이다.

$$\text{보상/비용함수(FBC)} = \ln \left(\frac{\text{benefit}}{\text{cost}} \right)$$

여기서, benefit : 각 사례별 피해액(즉 범행으로 인한 수입액수)

cost : 각 관측치의 월단위로 환산한 선고형량

위의 식에서 우변은 피해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형량으로 나눈 것으로 전자(피해액)의 범위는 만원에서 억대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후자(형량)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분포한다. 예를 들어 10년의 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월로 환산하면 120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매우 크다면 후자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상(전자)과 비용(후자)의 비는 매우 우경편포된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비의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 분포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로그변환의 필요성은 이 비의 분포와 이것의 로그변환한 값과의 2차원 PLOT에서 잘 알 수 있다(〈그림 4-2〉참조).



〈그림 4-2〉 이익과 비용의 비(FBC)와 이것의 로그변환값의 2차원 PLOT

다. 본범관련변수

여기서 본범관련변수란 1987년 출소 이전에 입소의 이유가 된 범죄와 관련된 변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가용했던 변수는 집단범여부와 범행형태이다. 전자는 범행이 혼자서 이루어졌는가(0) 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가(1)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범행형태는 범행의 성격을 나타내는 척도로 원래는 다음과 같은 8점 서열척도 - ① 과실범, ② 우발범, ③ 걱정범, ④ 기회범, ⑤ 예모범, ⑥ 관습범, ⑦ 직업범, ⑧ 4범 이상 - 인데 본 연구에서는 등간척도에 준하여 사용되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⁷⁾

〈표 4-1〉 범행형태 각 범주의 의미

범행형태	의 미
① 과실범	주의임무를 태만히 한 범죄
② 우발범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인 범죄
③ 걱정범	순간적인 정서적 흥분으로 평소의 인격과 전혀 무관한 범행을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죄
④ 기회범	사려의 부족과 유혹으로 우연한 기회가 범죄의 동기로 된 범죄
⑤ 예모범	범죄의 기회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를 폭력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흥기를 소지하는 등 공공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
⑥ 관습범	범죄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무기력적인 생활을 하는 심리적 변질자들의 범죄
⑦ 직업범	범죄의 욕구가 강하고 그들의 환경보다도 소질로 인하여 범하는 관습성있는 범죄
⑧ 4범 이상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회수를 기준하여 4회 이상의 자

(출처) : 교정누진 처우규정(법무부령 제 111호)

7) 사실상 이 척도는 몇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척도이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분류시 「교정처우누진규정」상의 정확한 의미보다는 대략적으로 서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라.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변수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변수로서는 전과횟수와 문신 또는 칼자국 여부, 최초음주연령, 최초흡연연령, 최초성경험연령,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의 여섯 가지 변수가 이용가능하였다. 전과횟수는 그대로 등간변수로서 사용되었고, 몸에 문신이나 칼자국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취하고 없는 경우 0의 값을 취하는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코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변수, 즉 최초음주연령, 최초흡연연령, 최초성경험 연령,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은 모두 연령 자체가 그대로 등간변수로서 사용되었다.

마. 교정관련변수

본 연구에서 교정관련변수는 교도소에서의 생활과 교정처우에 관련된 변수를 의미하는데, 출소형태, 징벌여부, 기능사자격증 취득여부, 직업훈련, 재소자특별순화교육, 새마을정신교육, 학과교육등이 조사가능하였다. 여기서 출소형태는 만기출소인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가석방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다시 코딩되었다. 그리고 재소시 징벌의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재소시 직업훈련에 의해 기능사자격증을 딴 경우는 1,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코딩되었다.⁸⁾

바.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는 출소 후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변수나 개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분석에 도입된 가용한 변수들은 출소시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생활수준, 지능지수, 가족원수, 종교유무,

8) 그의 나머지 교정교육 관련변수들은 분석단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한다.

혼인관계, 최초직업연령, 보호의 양호정도이다.

이중 출소시의 연령과, 학력, 재산정도, 지능지수, 가족원수, 최초의 직업연령은 그 자체로 등간변수로 또는 등간변수에 준하여 사용되었으며, 생활수준은 ‘하’일 경우 0의 값을, 그외 중하, 중상, 상의 경우는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다시 코딩되었다. 또한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종교를 가진 경우는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그리고 본 범죄로 입소하기전 미혼이었던 경우 0의 값을, 기혼이거나 동거인이 있었던 경우는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또 보호가 양호한 경우는 0, 보호가 불량하거나 조건부 양호⁹⁾한 경우는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다시 코딩되었다.

이상 앞에서 논의된 모든 가변인의 코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분석에 사용된 가변인의 코딩

변 수 명	척 도	코딩숫자
집단범여부	단독범	0
	집단범	1
문신 또는 칼자국 여부	없다	0
	있다	1
출소형태	만기출소	0
	가석방 또는 부정기형종료	1
징벌여부	없다	0
	있다	1
기능사자격증 취득여부	취득사실 없음	0
	취득	1
생활수준	하	0
	중하, 중상, 상	1
종교유무	없다	0
	있다	1
혼인관계	미혼	0
	기혼 및 동거	1
보호관계	양호	0
	조건부 양호 또는 불량	1

9) 실무에서는 수행자분류심사표의 보호관계의 항목은 미결입소시 서신왕래나 면회가 자주 있으면 보통 양호이고, 면회나 서신왕래가 전혀없거나 극히 없는 경우 불량이나 조건부 양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 각 범죄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범죄별로 상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 이것의 분류기준이 된 것은 대체로 형법전에 나오는 분류를 따랐고, 특별법의 경우 동종의 유사범죄에 포함시켰다. 경합범의 경우 보다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격상 유사한 범죄인 폭행과 상해를 같이 묶었고, 여기에 다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합하여 '폭력'라는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였다.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범죄분류의 기준

범죄의 범주	범죄명
폭력 및 상해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강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강도예비, 특수강도등, 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등의 재범 등
강간 살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도추행, 강간치사상; 미성년자 간음 등 살인, 존속살인, 위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절도	절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사기	사기
횡령	횡령
기타	그외 범죄

3. 조사 및 분석방법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실시

이 연구의 모집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들이고, 이들 중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 동안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송제2보호감호소, 마산교도소, 부산교도소(구 김해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의 7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605명의 재산범 출소자와 1993년에 이미 조사되었던 383명의 강력범 출소자를 합쳐 도합 988명의 1987년 출소자이다. 교도소의 선정은 두 자료 모두 출소연도(1987)의 2년 전이었던 1985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범죄유형별 재소자 분포를 보고(교정수용통계백년보 2권 참조) 충분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된 교도소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는 각 교도소별로 조사된 사례수이며, 기록이 송부된 경우 조사가능한 것은 만 교도소에서 조사하여 첨부하였다.

〈표 4-4〉 교도소별 사례수

조사연도(범죄유형)	출소교도소명	조사된 부수	첨가된 부수	소계
1993년(강력범)	대전교도소	81	3	84
	수원교도소	51	2	53
	영등포교도소	61	5	66
	원주교도소	65	1	66
	(구)인천교도소	57	3	60
	청주교도소	52	2	54
1994년(재산범)	영등포교도소	85	3	88
	안양교도소	40	1	41
	청송제2보호감호소	76	-	76
	마산교도소	88	2	90
	(구)김해교도소	91	5	96
	대구교도소	89	-	89
	대전교도소	125	-	125
합 계		961	27	988

조사는 강력범의 경우 1993년에, 재산범의 경우 1994년에 각각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기록을 조사원이 옮겨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여자와 수형자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극히 적은 형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출소 이후의 행적에 관한 자료는 경찰전산망을 통해 강력범의 경우 1993년 6월에, 재산범의 경우 1994년 9월에 실시한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입수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추적(follow-up)기간은 강력범의 경우 약 6년, 재산범의 경우 약 7년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각각 부호화(coding)와 키펀칭(key punching)의 과정을 거쳐 수량화된 후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해서 모두 처리되었다.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요인들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전체 모형의 검증은 영가설 $H_0: b_1 = b_2 = b_3 = \dots = b_k = 0$ 하에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모수의 검증은 영가설 $H_0: b = 0$ 하에서 Wald- χ^2 검증을 하였다.

또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사용된 모형은 반모수적(semi-parametric)이라 할 수 있는 비례적 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검증은 영가설 $H_0: \beta_1 = \beta_2 = \beta_3 = \dots = \beta_k = 0$ 하에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모수의 검증은 영가설 $H_0: \beta = 0$ 하에서 역시 χ^2 검증을 하였다. 또한 결측치(missing value)는 모두 평균치로 대체하였다.

제 2 절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4-5〉), 강력범의 경우 25세 이하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26세에서 30세 이하도 약 30%를 차지한 반면, 재산범의 경우 26세에서 30세 사이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세에서 35세 사이가 22.5%로 나타나 강력범보다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강력범의 경우 전체 강력범의 15.7%에 해당하는 60명의 소년범이 포함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산범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산범의 경우 40세 이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범죄의 경우 상당한 물리적 힘을 요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경찰청의 범죄분석에 나온 공식통계와 비교하면,¹⁰⁾ 재산범과 강력범 모두 26세에서 30세 사이가 다소 적게 표집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공식통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고르게 표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연 령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25	105	17.4(15.5)	150	39.4(48.0)
26-30	170	28.1(13.6)	116	30.3(17.5)
31-35	136	22.5(20.2)	59	15.4(14.8)
36-40	62	10.2(17.8)	28	7.3(8.6)
41-45	46	7.6	12	3.1
46-50	44	7.3	9	2.3
51-55	25	4.1	7	1.8
56-	17	2.8	1	0.3
합 계	605	100.0	382	100.0

※ 괄호안의 숫자는 경찰청에서 나온 범죄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표 3-2〉의 전과피의자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10) 물론 이 통계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93년의 한 년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4-6〉), 강력범보다 재산범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의 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졸에서 고졸 사이에 걸쳐있는 점은 대동소이하며, 재산범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강력범에 비해 높은 6.5%에 달하고 있어 일부의 재산범은 상당한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

학 력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무학	28	4.7	11	2.9
국졸(퇴)	191	31.9	91	24.3
중졸(퇴)	189	31.6	131	34.9
고졸(퇴)	146	24.4	131	34.9
전문대(퇴)	6	1.0	5	1.3
대학교 이상	39	6.5	6	1.6
합 계	599	100.0	375	100.0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구성형태를 살펴보면(〈표 4-7〉), 결손가정이 아닌 온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경우가 재산범의 경우 25.2%, 강력범의 경우 4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각각 재산범이 16.4%와 강력범이 18.1%였고, 처와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재산범은 19.3%, 강력범은 6.2%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만 있는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경제력이나 비공식적 통제의 부족과 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재산범의 경우 강력범에 비해 처와 자식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은 것은 재산범의 경우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7〉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

가족 구성형태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조부모	-	-	1	0.3
형제자매	-	-	20	5.4
형제자매 + 조부모	1	0.2	1	0.3
자	7	1.3	5	1.4
형제자매 + 자	3	0.5	2	0.5
처	13	2.3	-	-
처 + 형제자매	5	0.9	3	0.8
처 + 자	107	19.3	23	6.2
처 + 자 + 조부모	-	-	1	0.3
처 + 자 + 형제자매	9	1.6	-	-
모	14	2.5	10	2.7
모 + 형제자매	91	16.4	67	18.1
모 + 형제자매 + 조부모	1	0.2	-	-
모 + 자	8	1.4	2	0.5
모 + 자 + 형제자매	3	0.5	1	0.3
모 + 처	4	0.7	3	0.8
모 + 처 + 형제자매	11	2.0	7	1.9
모 + 처 + 자	24	4.3	10	2.7
모 + 처 + 형제자매	11	2.0	-	-
부	2	0.4	-	-
부 + 조부모	-	-	1	0.3
부 + 형제자매	15	2.7	17	4.6
부 + 형제자매 + 조부모	2	0.4	-	-
부 + 자	1	0.2	-	-
부 + 처	1	0.2	-	-
부 + 처 + 형제자매	2	0.4	1	0.3
부 + 처 + 자	6	1.1	4	1.1
부 + 처 + 자 + 형제자매	2	0.4	1	0.3
부 + 모	15	2.7	10	2.7
부 + 모 + 형제자매	140	25.2	159	43.0
부 + 모 + 형제자매 + 조부모	2	0.4	3	0.8
부 + 모 + 자	2	0.4	-	-
부 + 모 + 자 + 형제자매	2	0.4	1	0.3
부 + 모 + 처	5	0.9	2	0.5
부 + 모 + 처 + 형제자매	6	1.1	3	0.8
부 + 모 + 처 + 자	26	4.7	8	2.2
부 + 모 + 처 + 자 + 형제자매	13	2.3	4	1.1
부 + 모 + 처 + 자 + 형제자매 + 조부모	1	0.2	-	-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표 4-8〉), 재산범이나 강력범의 약 90% 정도가 하류나 중하류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재산범의 경우 하류가 72.3%로 가장 많고, 중하류가 17.9%로 다음을 차지했고, 이것은 강력범도 유사하다.

〈표 4-8〉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생활수준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상	13	2.3	8	2.2
중상	42	7.5	26	7.2
중하	100	17.9	47	13.0
하	404	72.3	280	77.6
합 계	559	100.0	361	100.0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종교분포를 보면(〈표 4-9〉), 재산범의 경우 기독교인 사람이 약 40%였고 불교가 28.2%, 그리고 천주교가 10.9% 순이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20.8%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력범의 경우도 역시 기독교가 가장 많으나, 다음으로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두번째로 많은 것 외에는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없다는 사람의 비율이 재산범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조사대상자의 종교

종 교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없음	119	20.8	104	28.3
기독교	229	40.1	159	43.3
불교	161	28.2	72	19.6
천주교	62	10.9	32	8.7
합 계	571	100.0	367	100.0

조사대상자들이 본범으로 인하여 수감되기 직전의 혼인상태를 보면(〈표 4-

10)), 강력범의 경우 소년범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재산범은 배우자와 같이 살았다는 경우가 42.4%로 강력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10〉 조사대상자의 본범 직전의 혼인상태

혼인상태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배우자와 같이 삶	233	42.4	72	20.3
동거	38	6.9	21	5.9
미혼	279	50.7	261	73.7
합 계	550	100.0	354	100.0

2. 재범의 원인

일반적으로 관계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는 2차원 분할표에 의한 재범상황의 분석은 나름대로의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즉 재범발생에 관련되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2차원적인 관계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특히 시간적 요소의 고려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다변량분석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재범여부를 기준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사건사 분석을 통해 재범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4-11〉은 재범여부를 2항반응변수로 하여 여러 설명변수를 위계적으로(hierarchical) 도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형 1]은 본범 및 처벌과 교정활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도입한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다시 비행 및 범죄경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고, [모형 3]은 [모형 2]에 사회적 및 개인적 배경관련요인

들을 추가로 도입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3]에 보상/비용 함수를 추가로 도입한 모형이다.

이러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장점은 각각의 변인들의 효과가 보다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징벌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의 확률이 높았으며, 체포가 신속할수록 오히려 재범의 확률이 높았다(각각 1%와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비행 및 범죄경력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해 본 결과[모형 2] 나타난 변화는, 체포기간의 효과가 없어지고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과 최초의 음주시기와 같은 비행 및 범죄경력 관련 변수의 영향이 각각 1%와 5%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를 추가로 도입해 본 결과[모형 3], 범죄경력에서의 진입연령의 효과는 사라지고 전과범수의 효과가 새로이 나타났고, 이와 함께 출소시의 연령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보호관계의 효과도 역시 나타났다.¹¹⁾ 또한 출소시의 연령이 통제되면서 범죄경력에서의 진입연령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출소시의 연령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빨리 범죄경력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 4]는 합리적 선택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모형 3]에 다시 보상/손실함수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큰 변화는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포화모형에서 나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변수들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1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소시의 연령이라는 배경변수가 전과범수의 억압변수(suppressor variables)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형 2]에서 전과범수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전과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고, 따라서 비록 전과가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연령이 높으므로 낮은 재범가능성을 가져야 하므로 두 가지의 상반되는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소시의 연령이라는 변수는 전과범수와 재범과의 관계를 억압함으로써 [모형 2]에서는 전과범수가 검증되지 않은 반면, 모형3 이후에서는 출소시의 연령이라는 억압변수를 통제해 줌으로써 전과범수의 강한 효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살펴보면,¹²⁾ 재소 당시 징벌경험이 있는 경우 출소후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17^*$), 그리고 전과가 많을수록($\beta=.223^{**}$),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가 빠를 수록($\beta=-.165^*$)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소시의 연령이 높을수록($\beta=-.328^{***}$) 재범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관계가 오히려 조건부 양호이거나 불량인 경우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11^*$) 이것은 조건부 양호의 경우 재범률이 낮았던 반면에 양호한 사람의 경우가 거의 불량한 사람의 재범률과 비슷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이상의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출소시의 연령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 전과범수의 효과가, 그 다음으로 최초의 음주연령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우선 가석방이나 처벌의 엄격성, 그리고 체포의 신속성, 집단범여부, 범행형태, 그리고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 문신이나 칼자국 여부, 흡연시작시기, 최초의 성경험연령, 학력, 생활수준, 지능, 가족원수, 종교유무, 혼인관계, 최초의 직업연령과 같은 많은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석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강력범의 표집과는 달리 표집단계에서 가석방의 수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하지 못한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일반적으로 가석방자의 비율이 전체범죄의 경우 30% 정도인데 반해,(박철현, 1994년, p.38 참조) 이 연구가 재산범에 한정되기는하나 표집된 재산범의 사례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4사례 중 가석방자는 9.8%에 불과한 59명이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수가 확보될 경우 이는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형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산범의 특성상, 과실범이나 우발범, 걱정범과 같은 형태의 범죄가 거의 없어 변량이 너무 좁거나, 전과범수와 같은 변수에 의해서 허위관계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 이 경우 보호관계라는 변수를 양호와 조건부 양호를 하나로 묶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기술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앞의 강력범에 관한 연구와의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표 4-11) 각 변인들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β	b	β	b	β	b	β
가석방	0.116	0.019	0.140	0.23	0.231	0.038	0.255	0.042
징벌유무	1.163**	0.137	1.038*	0.122	0.988*	0.116	0.995*	0.117
2급기능사	-0.501	-0.086	-0.371	-0.064	-0.453	-0.078	-0.441	-0.076
엄격성s	-0.041	-0.022	-0.053	-0.029	-0.101	-0.006	-0.003	-0.002
체포기간	-0.001*	-0.299	-0.001	-0.198	-0.000	-0.101	-0.000	-0.127
집단범	-0.036	-0.009	-0.091	-0.023	-0.183	-0.047	-0.213	-0.055
범행형태	-0.112	0.079	0.031	0.022	0.055	0.039	0.074	0.052
전과범수			0.103	0.089	0.237*	0.204	0.259**	0.223
진입연령			-0.058**	-0.188	-0.019	-0.060	-0.016	-0.053
문신			-0.167	-0.040	-0.262	-0.062	-0.256	-0.061
음주연령			-0.119*	-0.175	-0.117	-0.171	-0.112*	-0.165
흡연연령			0.24	0.038	0.039	0.062	0.037	0.058
성경험연령			-0.004	-0.007	0.025	0.040	0.020	0.033
연령					-0.060***	-0.308	-0.064***	-0.328
학력					-0.013	-0.008	-0.035	-0.022
생활수준					-0.387	-0.031	-0.320	-0.026
지능					-0.013	-0.083	-0.013	-0.084
가족원수					-0.046	-0.035	-0.048	-0.036
종교					0.147	0.032	0.148	0.032
혼인관계					-0.090	-0.024	-0.121	-0.032
직업연령					0.018	0.040	0.106	0.35
보호관계					-0.440*	-0.114	-0.430*	-0.111
ln(B/C)							0.078	0.098

-2Log Likeli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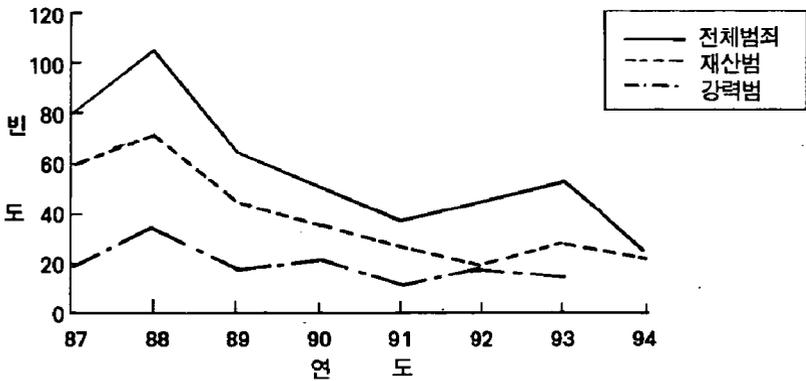
intercept

only	837.8	837.8	837.8	837.8
# with covariates	814.6	787.3	762.2	759.1
model χ^2	24.14**	50.53***	75.61***	78.7***
사례수	605	605	605	605

* P<.05 ** P<.01 *** P<.001

s : Standardized

이상의 분석은 출소 후 약 7년 동안의 재범여부에 대한 분석으로, 이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출소 후에 궁극적으로 재범을 하게될 가능성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출소 후의 어느 시점에 재범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그림 4-3〉) 대체로 재범자의 분포가 출소 직후인 87년과 88년에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약 5-6년 후인 92년에서 93년경 부터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94년은 9월까지의 범죄기록이기 때문에 크게 낮은 것임). 그리고 강력범 보다는 재산범이 출소 직후에 빨리 재범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범죄자유형별로 본 재범자의 연도별 분포

이러한 재범까지의 기간을 감안하기 위해 출소 후 재범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우선 다음의 표에서(〈표 4-12〉),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된 위계적 회귀모형에서의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징벌유무와 체포기간의 효과가 나타났고, 여기에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변수를 도입한 결과

[모형 2], 징벌유무,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 그리고 최초 음주연령의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다시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를 도입한 [모형 3]에서는 출소시의 연령의 강한 효과와 함께 전과범수의 효과와 보호관계의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다시 보상/손실함수를 도입한 결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소시 연령을 통제한 [모형 3]의 경우 전과범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출소시의 연령이라는 변수가 [모형 2]에서는 전과범수와 재범위험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억압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의 효과가 출소시의 연령이 통제되면서 사라지는 것은 대체로 출소시의 연령이 낮은 사람이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된다. 그리고 보상/손실함수를 도입한 [모형 4]의 경우 [모형 3]과 비교해서 다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범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상/손실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위계적 모형에 의한 분석의 포화모형인 [모형 4]에서 나온 결과를 요약하면, 가석방과 기능사자격증 취득여부, 징벌유무, 상대적 엄격성, 체포의 신속성, 집단범여부, 범행형태,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 문신이나 칼자국 여부, 최초의 흡연연령, 최초의 성경험연령, 학력, 생활수준, 지능, 가족원수, 종교유무, 혼인관계, 최초의 직업연령과 같은 변수는 유의미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고, 전과가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상태가 조건부양호나 불량이라고 평가된 경우 양호라고 평가된 경우에 비해서 약 1.4배 정도 재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eta) = -1.37$).

(표 4-12) 각 변인들이 재범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건사 분석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베타	표준오차	베타	표준오차	베타	표준오차	베타	표준오차
가석방	0.075	0.233	0.094	0.234	0.137	0.234	0.0148	0.235
징벌유무	0.644**	0.232	0.504*	0.242	0.414	0.244	0.412	0.245
2급기능사	-0.331	0.216	-0.217	0.218	-0.284	0.220	-0.275	0.220
엄격성s	-0.006	0.063	-0.010	0.065	0.012	0.066	0.017	0.066
체포기간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집단범	-0.084	0.134	-0.154	0.139	-0.205	0.143	-0.226	0.144
범행형태	0.093	0.052	0.035	0.073	0.019	0.074	0.055	0.074
전과범수			0.071	0.058	0.215**	0.066	0.227***	0.067
진입연령			-0.045**	0.014	-0.010	0.017	-0.008	0.017
문신			-0.081	0.144	-0.143	0.147	-0.141	0.147
음주연령			-0.093**	0.035	-0.104***	0.037	-0.100**	0.037
흡연연령			0.015	0.030	0.028	0.033	0.027	0.033
성경험연령			-0.008	0.027	0.023	0.027	0.021	0.028
연령					-0.051***	0.012	-0.053***	0.017
학력					-0.029	0.064	-0.039	0.065
생활수준					-0.334	0.642	-0.278	0.464
지능					-0.007	0.005	-0.008	0.005
가족원수					-0.022	0.048	-0.023	0.047
종교					0.158	0.159	0.158	0.159
혼인관계					-0.185	0.158	-0.203	0.158
직업연령					0.013	0.018	0.013	0.018
보호관계					-0.321*	0.143	-0.316*	0.143
ln(B/C)							0.041	0.031

-2Log Likelihood

intercept

only 3434.1 3434.1 3434.1 3434.1

with covariates 3409.6 3378.7 3345.5 3343.7

model χ^2 24.49** 55.35*** 88.59*** 90.4***

사례수 605 605 605 605

※ 비례적 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에 의한 추정

a : P<.1 * : P<.05 ** : P<.01 *** : P<.001

s : Standardized

이상의 두 가지 분석, 즉 재범여부와 재범위험에 관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하면, 먼저 재소당시 징벌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사건사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벌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결국 전반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시간에 따라 항상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행 및 범죄경력 관련변수(전과범수와 최초음주연령)의 영향력이 사건사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행 및 범죄경력에 일찍 빠져들수록, 그리고 깊이 빠져들수록 출소 후에 빠른 기간 내에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과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빨리 재범을 하는 것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인적 범죄율을 가진 어떤 하위집단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재산범에 대한 분석을 다시 절도와 사기범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 결과(〈표 4-13〉), 절도의 경우 출소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과가 많을수록, 음주를 빨리 경험했을수록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보호관계가 불량이거나 조건부양호라고 평가된 경우 재범의 확률이 오히려 낮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조건부양호라고 평가된 사람의 낮은 재범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절도의 경우 손실/보상합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절도범죄는 손실과 보상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기범죄의 경우 전과가 많을수록, 손실에 비해 보상이 많을수록, 그리고 오히려 엄하게 처벌된 경우에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소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범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절도와와의 차이점은 보호관계의 효과가 사라졌으며, 처벌과 관련된 변수인 처벌의 엄격성과 보상/손실합수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기의 경우 큰 액수를 사기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량을 높게 받게 되는데, 형량은 피해액수와 비례해서 무한히 높일수 없으므로, 이 경우 물론 사기범들 중에서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손실에 비해서

<표 4-13> 절도와 사기범죄의 재범여부에 대한 사건사 분석

변수명	절도		사기	
	배타	표준오차	배타	표준오차
가석방	-0.069	0.248	1.069	1.123
징벌유무	0.354	0.298	0.468	0.625
2급기능사	-0.185	0.265	0.111	0.618
엄격성s	-0.030	0.077	0.335*	0.168
체포기간	-0.001	0.001	-0.000	0.001
집단범	-0.280	0.160	0.104	0.418
범행형태	0.100	0.087	-0.069	0.168
전과범수	0.217**	0.081	0.438**	0.142
진입연령	-0.24	0.021	0.012	0.029
문신	-0.073	0.165	-0.852	0.443
음주연령	-0.094*	0.047	-0.049	0.084
흡연연령	0.016	0.141	0.011	0.089
성경험연령	-0.002	0.034	0.053	0.053
연령	-0.064***	0.016	-0.069**	0.026
학력	-0.104	0.078	0.093	0.151
생활수준	-0.450	0.725	0.032	0.668
지능	-0.006	0.006	-0.002	0.014
가족원수	-0.024	0.056	-0.094	0.112
종교	0.250	0.182	-0.266	0.399
혼인관계	-0.116	0.179	-0.316	0.438
직업연령	0.034	0.021	-0.054	0.051
보호관계	-0.388*	0.163	-0.054	0.361
ln(B/C)	0.013	0.035	0.212*	0.091
-2Log Likelihood				
• without covariates		2538.6		486.9
• with covariates		2470.0		451.6
model χ^2		68.66***		35.29*
사례수		444		126

* : P<.05 ** : P<.01 *** : P<.001

s : Standardized

보상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다시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기범죄의 경우 다른 강력범이나 절도범죄에 비해서 매우 도구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것은 각 범죄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도의 경우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사기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매우 명확하므로 합리적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⁴⁾

이상의 재범여부 및 재범위험의 분석에서 (<표 4-11>, <표 4-12>), 잠정적인 결론은, 재산범의 재범에는 공통적으로 출소시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음주연령과 전과범수와 같은 변수들이 함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문화에 일찍, 그리고 깊이 빠져든 사람일수록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점은 강력범과는 달리 첫 모형에서부터 범행형태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산범의 경우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예모범이나 직업범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강력범과 비교하면(최인섭·박철현, 1994 pp.80-103 참조), 먼저 재범여부에 관한 분석에서 강력범의 경우 생활수준과 가족원수와 같은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와 집단범여부, 범행형태와 같은 본범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는데 반해, 재산범의 경우 연령과 같은 개인적 배경변수와, 기능자격증 취득여부, 징벌경험, 전과범수, 최초의 음주연령과 같은 교정활동관련변수 및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강력범과 재산범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범의 경우 이전 범행의 계획정도가 치밀하거나 직업적인 경우, 그리고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재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재산범의 경우 범죄성향이나 범죄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재산범의 경우 강력범과 달리 연령이 재범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것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Cochran과 Chamilin(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강력범의 경우 전과, 출소형태, 보호상태와 같은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재산범의 경우 전과, 최초음주시기, 연령과 같은 변수가 영향력이 있었다. 여기서 차이점은 강력범과는 달리 재산범의 경우 교정관련변수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비행 및 범죄경력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그리고 연령이 범죄의 지속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재범의 과정 : 범죄경력

가. 범죄경력과 연령에 관한 기술적 특성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 즉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연령과 전문화 및 심각화 등과 같은 주제는 범죄경력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 중 먼저 경력범죄자가 언제 범죄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4-14>) 이 연구에서 입수가 가능한 자료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즉 최초로 비행을 했다고 보고된 연령과 최초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입건된 연령의 두 가지이다.¹⁵⁾ 먼저 최초로 비행을 한 연령을 살펴보면, 16세가 1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7세에서 19세에 비행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초로 경찰에 입건된 연령을 살펴보면, 19세가 11.6%로 가장 높고, 주로 19세에서 22세에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각각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연령이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중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령분포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최초로 비행을 한 연령보다 경찰에 최초로 입건된 연령이 다소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전자의 경우 수형자분류심사표의 자료이고, 후자는 범죄경력조회 자료이다.

〈표 4-14〉 범죄경력에서의 진입연령

연령	최초의 경찰입건 연령		보고된 최초의 비행연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이하	1	0.1	23	3.5
14	1	0.1	23	3.5
15	5	0.6	47	7.1
16	9	1.2	73	11.1
17	27	3.5	59	8.9
18	47	6.0	68	10.3
19	90	11.6	67	10.2
20	86	11.1	53	8.0
21	89	11.5	46	7.0
22	74	9.5	33	5.0
23	46	5.9	28	4.2
24	42	5.4	19	2.9
25	37	4.8	22	3.3
26	42	5.4	14	2.1
27	19	2.4	16	2.4
28	23	3.0	6	0.9
29	15	1.9	6	0.9
30	10	1.3	8	1.2
31	8	1.0	4	0.6
32	10	1.6	7	1.1
33	12	1.5	2	0.3
34	10	1.3	2	0.3
35	5	0.6	5	0.8
36	6	0.8	3	0.5
37	8	1.0	3	0.5
38	7	0.9	3	0.5
39	7	0.9	2	0.3
40	5	0.6	4	0.6
41	4	0.5	1	0.2

연 령	최초의 경찰입건 연령		보고된 최초의 비행연령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42	4	0.5	1	0.2
43	-	-	2	0.3
44	2	0.3	2	0.3
45	10	1.3	1	0.2
46	3	0.4	1	0.2
47	3	0.4	2	0.3
48	1	0.1	2	0.3
49	2	0.3	1	0.2
50세 이상	7	0.9	1	0.2
합 계	777	100.0	660	100.0

〈표 4-15〉 조사대상자들의 최초의 음주연령

연 령	재 산 범		강 력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14세 이하	4	0.9	4	1.4
15	5	1.2	4	1.4
16	8	1.9	11	3.7
17	21	4.9	34	11.6
18	48	11.2	52	17.7
19	80	18.6	50	17.0
20	106	24.7	58	19.7
21	36	8.4	29	9.9
22	39	9.1	21	7.1
23	22	5.1	9	3.1
24	18	4.2	6	2.0
25	15	3.5	6	2.0
26	6	1.4	1	0.3
27	7	1.6	3	1.0
28세 이상	15	3.5	6	2.0
합 계	430	100.0	294	100.0

※ 입소시까지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비행의 시작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으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최초음주와 흡연, 성경험 연령을 살펴보는 것은 범죄경력에의 진입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조사대상자들이 최초로 음주를 하게 된 연령을 살펴보면,(<표 4-15>) 20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18세에서 20세 사이에서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하의 매우 낮은 연령에 벌써 음주를 경험했다는 사람도 각각 9명과 8명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최초로 흡연을 하게 된 연령을 살펴보면,(<표 4-16>) 대체로 18세에서 21세 사이에서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재산범의 경우 61.5%, 강력범의 경우 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0세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조사대상자의 최초의 흡연연령

연령	재산범		강력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4세 이하	6	1.2	4	1.3
15	7	1.4	4	1.3
16	10	2.0	16	5.2
17	28	5.7	34	11.1
18	58	11.9	51	16.6
19	86	17.6	51	16.6
20	104	21.3	54	17.6
21	52	10.7	35	11.4
22	43	8.8	28	8.1
23	29	5.9	8	2.6
24	18	3.7	3	1.0
25	21	4.3	9	2.9
26	2	0.4	1	0.3
27	5	1.0	1	0.3
28세 이상	19	3.9	11	3.6
합계	488	100.0	307	100.0

※ 입소시까지 흡연을 경험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조사대상자들이 최초로 성경험을 하게 된 연령을 살펴보면,(<표 4-17>) 앞의 두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17세에서 21세 사이가 대부분이었으나, 재산범에 비해 강력범의 경우 최초성경험 연령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조사대상자들의 최초의 성경험 연령

연 령	재 산 범		강 령 범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14세 이하	4	0.8	1	0.3
15	6	1.2	8	2.6
16	10	1.9	12	3.9
17	35	6.8	38	12.4
18	62	12.1	55	17.9
19	87	17.0	59	19.2
20	106	20.7	52	16.9
21	52	10.1	25	8.1
22	44	8.6	22	7.2
23	32	6.2	11	3.6
24	17	3.3	5	1.6
25	23	4.5	11	3.6
26	10	1.9	2	0.7
27	10	1.9	2	0.7
28세 이상	15	2.9	4	1.4
합 계	513	100.0	307	100.0

※ 기록작성시까지 성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음으로 각각의 범죄경력의 1범에서 12범까지 범수별로 연령에 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1번째 범죄시의 평균연령이 24세이고, 19세에 첫번째 범죄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빠른 13세에 시작한 사람과 62세라는 높은 연령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번째 범죄를 범한 연령은 평균 26세이었으며, 21세에 2번째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세번째 범죄는 25

세에, 그리고 네번째 범죄는 28세에 범한 사람이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18>에서 우경편포된(즉 우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분포가 오른쪽으로 상당히 길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뒤늦게 범죄 경력을 쌓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범수별 연령에 관한 기술통계치

범죄 차례	평 균	최빈치	최 소	최 대
1번째 범죄	24	19	13	62
2번째 범죄	26	21	16	57
3번째 범죄	28	25	18	56
4번째 범죄	30	28	18	59
5번째 범죄	33	27	19	58
6번째 범죄	35	32	18	61
7번째 범죄	37	35	23	64
8번째 범죄	38	-	26	62
9번째 범죄	41	-	28	69
10번째 범죄	41	-	30	55
11번째 범죄	44	-	27	58
12번째 범죄	51	-	35	63

이상의 논의에서 최초로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행이나 범죄경력이 고등학교 2-3학년과 졸업 직후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특히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취업과 진학 등의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시기로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생활과 진로지도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때 비행을 경험한 후 실제로 경찰활동에 의한 공식적인 범죄경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는 평균 24세로서, 이후 약 2년에 한 번 정도의 (경찰에 의해 밝혀진) 범죄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경력의 자세한 유형은 다음의 전이형태에서 논의될 것이다.

나. 범죄유형에서의 전이형태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표집된 강력범과 재산범을 합친 도합 990명의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로 범죄경력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논의하고, 특히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 및 일반화의 정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의 표들은 어떤 범죄에서 다음의 범죄로 이전해가는 유형을 나타낸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구에서 표집된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에서 그의 범죄경력을 시작했고, 어떤 형태로 그의 범죄경력을 쌓아가는가에 대한 사실들이다. 이 표에서 각 셀(cell) 안에 들어 있는 4개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셀 안의 첫번째 줄, 즉 맨 위의 숫자는 각 셀에 해당하는 절대빈도를 의미하고 두번째 줄의 수치는 전체 사례수에 대한 이것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세번째의 백분율은 열 백분율(row percent)으로서 n번째 범죄가 예를 들어 폭력일 경우 다음으로 범하는 범죄(n+1번째 범죄)는 어떤 것이 많은가를 알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백분율은 행 백분율(column percent)으로서 n+1번째 범죄가 어떤 범죄(ex. 폭력)일 때, 어떤 범죄(n번째 범죄)로 부터 주로 전이해 왔는가를 나타낸다.

우선 첫 범죄에서 다음의 두번째 범죄로 전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표 4-19〉), 폭력으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경우 42.46%가 다시 폭력을 범했고, 19.6%가 절도로 재범을 했고, 7.8%가 강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폭력으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17.9%의 경우 범죄를 그만두었거나 오랫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도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경우 8.7%만이 다시 강도로 재범을 했고, 12.5%는 폭력으로, 10.6%는 절도로 전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도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대다수에 해당하는 60.6%는 죄경력을 그만두었거나, 재범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으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10.8%가 다시 강간을 범했고, 그의 폭력과 절도가 각각 18.9%를 차지했고, 37.8%는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살인으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재범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표 4-19〉 첫 범죄에서 두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첫범죄	두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 력	76	14	6	1	35	5	1	9	32	179
	8.15	1.50	0.64	0.11	3.76	0.54	0.11	0.97	43	19.21
	42.46	7.82	3.35	0.56	19.55	2.79	0.56	5.03	17.88	
	52.05	29.17	33.33	33.33	9.00	8.77	8.33	12.68	17.02	
강 도	13	9	1	1	11	3	0	3	63	104
	1.39	0.97	.011	0.11	1.18	0.32	0.00	0.32	6.76	11.16
	12.50	8.65	0.96	0.96	10.58	2.88	0.00	2.88	6.58	
	8.90	18.75	5.56	33.33	2.83	5.26	0.00	4.23	33.51	
강 간	7	1	4	0	7	0	1	3	14	37
	0.75	0.11	0.43	0.00	0.75	0.00	0.11	0.32	1.50	3.97
	18.92	2.70	10.81	0.00	18.92	0.00	2.70	8.11	37.84	
	4.79	2.08	22.22	0.00	1.80	0.00	8.33	4.23	7.45	
살 인	3	0	0	0	1	0	0	1	20	25
	0.32	0.00	0.00	0.00	0.11	0.00	0.00	0.11	2.15	2.68
	12.00	0.00	0.00	0.00	4.00	0.00	0.00	4.00	80.00	
	2.05	0.00	0.00	0.00	0.26	0.00	0.00	1.41	10.64	
절 도	38	23	4	1	295	12	2	23	31	429
	4.08	2.47	0.43	0.11	31.65	1.29	0.21	2.47	3.33	46.03
	8.86	5.36	0.93	0.23	68.76	2.80	0.47	5.36	7.23	
	26.03	47.92	22.22	33.33	75.84	21.05	16.67	32.39	16.49	
사 기	2	0	1	0	10	22	5	12	15	67
	0.21	0.00	0.11	0.00	1.07	2.36	0.54	1.29	1.61	7.19
	2.99	0.00	1.49	0.00	14.93	32.84	7.46	17.91	22.39	
	1.37	0.00	5.56	0.00	2.57	38.60	41.67	16.90	7.98	
횡 령	2	0	0	0	3	5	0	3	8	21
	0.21	0.00	0.00	0.00	0.32	0.54	0.00	0.32	0.86	2.25
	9.52	0.00	0.00	0.00	14.29	23.81	0.00	14.29	38.10	
	1.37	0.00	0.00	0.00	0.77	8.77	0.00	4.23	4.26	
기 타	5	1	2	0	27	10	3	17	5	70
	0.54	0.00	0.21	0.00	2.90	1.07	0.32	1.82	0.54	7.51
	7.14	1.43	2.86	0.00	38.57	14.29	4.29	24.29	7.14	
	3.42	2.08	11.11	0.00	6.94	17.54	25.00	23.94	2.66	
Total	146	48	18	3	389	57	12	71	188	932
	15.67	5.15	1.93	0.32	41.74	6.12	1.29	7.62	20.17	100.00

※ 위의 셀(cell)안의 수치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빈도, 백분율, 열백분율, 행백분율을 나타낸다. 이하의 표도 모두 같다.

80%가 아직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재산범인 절도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다시 절도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무려 68.8%에 이르고 있고, 그외 폭력으로 재범한 경우가 8.9%, 강도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경우 범죄경력을 그만두거나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다시 사기로 재범한 경우가 32.8%에 달했고, 그외 기타 다른 범죄로 재범하는 경우가 17.9%, 그리고 절도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기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경우 이후 범죄경력을 그만두거나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은 22.4%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범죄경력을 시작한 경우 23.8%가 사기로 재범을 했고, 절도와 기타 다른 범죄로 재범을 한 경우가 각각 14.3%였고,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은 38.1%였다. 반면 다시 횡령으로 재범을 한 경우는 한 케이스도 찾을 수 없었다.

〈표 4-20〉은 두번째 범죄에서 세번째 범죄로의 전이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두번째 범죄로 폭력을 범한 사람이 다시 폭력을 범한 경우는 36.6%였고,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19.3%였고, 재범을 그만 둔 경우가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범죄로 강도를 범한 사람이 다시 강도를 범한 경우는 2.1%에 불과하였고, 폭력으로 이전한 경우가 16.7%,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12.5%,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45.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두번째 범죄로 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시 강간으로 재범한 경우는 5.6%에 불과하였고, 폭력으로 이전하거나(27.8%),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3.3%). 두번째 범죄로 절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한 경우는 무려 64.1%였고, 그외 15.6%는 아직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범죄로 사기를 범한 사람이 다시 사기를 범한 경우는 42.1%였고, 그외 절도가 15.8%, 기타 범죄가 8.7%였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범죄로 횡령을 범한 사람의 경우 사기로 이전해 간 경우가 41.7%에 이르고 있었다.

〈표 4-20〉 두번째 범죄에서 세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첫범죄	세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 력	53	7	4	0	28	4	0	6	43	145
	7.12	0.94	0.54	0.00	3.76	0.54	0.00	0.81	5.78	19.49
	36.55	4.83	2.76	0.00	19.31	2.76	0.00	4.14	29.66	
	53.54	31.82	21.05	0.00	8.97	6.45	0.00	10.91	25.44	
강 도	8	1	1	1	6	1	0	8	22	48
	1.08	0.13	0.13	0.13	0.81	0.13	0.00	1.08	2.96	6.45
	16.67	2.08	2.08	2.08	12.50	2.08	0.00	16.67	45.83	
	8.08	4.55	5.26	100.00	1.92	1.61	0.00	14.55	13.02	
강 간	5	2	1	0	2	0	0	2	6	18
	0.67	0.27	0.13	0.00	0.27	0.00	0.00	0.27	0.81	2.42
	27.78	11.11	5.56	0.00	11.11	0.00	0.00	11.11	33.33	
	5.05	9.09	5.26	0.00	0.64	0.00	0.00	3.64	3.55	
살 인	1	0	0	0	0	0	0	0	2.	3
	0.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7	0.40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6.67	
	1.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8	
절 도	18	9	10	0	250	15	3	24	61	390
	2.42	1.21	1.34	0.00	33.60	2.02	0.40	3.23	8.20	52.42
	4.62	2.31	2.56	0.00	64.10	3.85	0.77	6.15	15.64	
	18.18	40.91	52.63	0.00	80.13	24.19	60.00	43.64	36.09	
사 기	2	0	0	0	9	24	1	5	16	57
	0.27	0.00	0.00	0.00	1.21	3.23	0.13	0.67	2.15	7.66
	3.51	0.00	0.00	0.00	15.79	42.11	1.75	8.77	28.07	
	2.02	0.00	0.00	0.00	2.88	38.71	20.00	9.09	9.47	
횡 령	1	1	0	0	0	5	1	2	2	12
	0.13	0.13	0.00	0.00	0.00	0.67	0.13	0.27	0.27	1.61
	8.33	8.33	0.00	0.00	0.00	41.67	8.33	16.67	16.67	
	1.01	4.55	0.00	0.00	0.00	8.06	20.00	3.64	1.18	
기 타	11	2	3	0	17	13	0	8	17	71
	1.48	0.27	0.40	0.00	2.28	1.75	0.00	1.08	2.28	9.54
	15.49	2.82	4.23	0.00	23.94	18.31	0.00	11.27	23.94	
	11.11	9.09	15.79	0.00	5.45	20.97	0.00	14.55	10.06	
Total	99	22	19	1	312	62	5	55	169	744
	13.31	2.96	2.55	0.13	41.94	8.33	0.67	7.39	22.72	100.00

다음으로 세번째 범죄에서 네번째 범죄로의 전이형태를 살펴보면(〈표 4-21〉), 먼저 폭력의 경우 네번째 범죄에서 다시 폭력을 범한 경우는 44.4%였고, 절도는 12.1%,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는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22.7%였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었다. 강간의 경우도 유사하게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31.58%였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47.4%였다. 절도의 경우 56.4%가 다시 절도를 범하였고, 그외 20.5%가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51.6%가 다시 사기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 절도가 11.3%,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는 17.7%로 나타났다.

네번째 범죄에서 다섯번째 범죄로의 전이형태에서(〈표 4-22〉) 재범을 안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폭력의 경우 다시 폭력을 범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고, 강도의 경우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26.7%로, 강간의 경우 절도로 이전한 경우가 28.6%로, 절도의 경우 다시 절도를 범한 사람이 58.2%로, 사기의 경우 다시 사기를 범한 경우가 36.8% 등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경력을 그만두거나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는 폭력이 32.8%, 강도가 53.3%, 강간이 42.9%, 절도가 25%, 사기가 26.32%, 그리고 기타 다른 범죄가 40.0%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범죄에서 여섯번째 범죄로의 전이형태에서(〈표 4-23〉) 재범을 안한 경우를 제외하면 폭력의 경우 46.9%가 다시 폭력을, 절도의 경우 50.0%가 다시 절도를, 사기의 경우 29.73%가 다시 사기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는 폭력이 32.7%, 절도가 32.3%, 사기가 46.0%, 그리고 기타범죄가 35.3%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섯 개의 전이표에서 Farrington(1986)의 전문화계수를 계산한 것이 다음의 〈표 4-24〉이다. 이 표의 세로는 각각의 범죄를 나타내고, 가로는 이 세로에 나타난 각각의 전이단계를 나타낸다. 아래의 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폭력과 절도, 사기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례수가 상당히 많은 첫번째 범죄에서

〈표 4-21〉 세번째 범지에서 네번째 범지로의 전이행렬

첫범죄	네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절도	사기	횡령	기타	계범안함	
폭력	44	1	1	1	12	2	0	8	30	99
	7.65	0.17	0.17	0.17	2.09	0.35	0.00	1.39	5.22	17.22
	44.44	1.01	1.01	1.01	12.12	2.02	0.00	8.08	30.30	
	65.67	6.67	14.29	100.00	5.45	3.51	0.00	14.55	20.27	
강도	1	0	0	0	5	0	0	2	14	22
	0.17	0.00	0.00	0.00	0.87	0.00	0.00	0.35	2.43	3.83
	4.55	0.00	0.00	0.00	22.73	0.00	0.00	9.09	63.64	
	1.49	0.00	0.00	0.00	2.27	0.00	0.00	3.64	9.46	
강간	2	0	0	0	6	0	0	2	9	19
	0.35	0.00	0.00	0.00	1.04	0.00	0.00	0.35	1.57	3.0
	10.53	0.00	0.00	0.00	31.58	0.00	0.00	10.53	47.37	
	2.99	0.00	0.00	0.00	2.73	0.00	0.00	3.64	6.08	
살인	0	0	0	0	0	0	0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7	0.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8	
절도	15	13	5	0	176	12	2	25	64	312
	2.61	2.26	0.87	0.00	30.61	2.09	0.35	4.35	11.13	54.26
	4.81	4.17	1.60	0.00	56.41	3.85	0.64	8.01	20.51	
	22.39	86.67	71.43	0.00	80.00	21.05	40.00	45.45	43.24	
사기	0	0	0	0	7	32	3	9	11	62
	0.00	0.00	0.00	0.00	1.22	5.57	0.52	1.57	1.91	10.78
	0.00	0.00	0.00	0.00	11.29	51.61	4.84	14.52	17.74	
	0.00	0.00	0.00	0.00	3.18	56.14	60.00	16.36	7.43	
횡령	0	0	0	0	3	2	0	0	0	5
	0.00	0.00	0.00	0.00	0.52	0.35	0.00	0.00	0.00	0.87
	0.00	0.00	0.00	0.00	60.00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6	3.51	0.00	0.00	0.00	
기타	5	1	1	0	11	9	0	9	19	55
	0.87	0.17	0.17	0.00	1.91	1.57	0.00	1.57	3.30	9.57
	9.09	1.82	1.82	0.00	20.00	16.36	0.00	16.36	34.55	
	7.46	6.67	14.29	0.00	5.00	15.79	0.00	16.36	12.84	
Total	67	15	7	1	220	57	5	55	148	575
	11.65	2.61	1.22	0.17	38.26	9.91	0.87	9.57	25.74	100.00

〈표 4-22〉 네번째 범죄에서 다섯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네번째	다섯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력	31	0	1	9	1	0	3	22	67
	7.26	0.00	0.23	2.11	0.23	0.00	0.70	5.15	15.69
	46.27	0.00	1.49	13.43	1.49	0.00	4.48	32.84	
	63.27	0.00	16.67	5.49	2.70	0.00	9.09	17.46	
강도	1	2	0	4	0	0	0	8	15
	0.23	0.47	0.00	0.94	0.00	0.00	0.00	1.87	3.51
	6.67	13.33	0.00	26.67	0.00	0.00	0.00	53.33	
	2.04	22.22	0.00	2.44	0.00	0.00	0.00	6.35	
강간	1	1	0	2.00.4	0	0	0	3	7
	0.23	0.23	0.00	7	0.00	0.00	0.00	0.70	1.64
	14.29	14.29	0.00	28.57	0.00	0.00	0.00	42.86	
	2.04	11.11	0.00	1.22	0.00	0.00	0.00	2.38	
살인	0	0	0	0	0	0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9	
절도	9	6	3	128	6	1	12	55	220
	2.11	1.41	0.70	29.98	1.41	0.23	2.81	12.88	51.52
	4.09	2.73	1.36	58.18	2.73	0.45	5.45	25.00	
	18.37	66.67	50.00	78.05	16.22	33.33	36.36	43.65	
사기	2	0	0	9	21	1	9	15	57
	0.47	0.00	0.00	2.11	4.92	0.23	2.11	3.51	13.35
	3.51	0.00	0.00	15.79	36.84	1.75	15.79	26.32	
	4.08	0.00	0.00	5.49	56.76	33.33	27.27	11.90	
횡령	0	0	0	2	2	1	0	0	5
	0.00	0.00	0.00	0.47	0.47	0.23	0.00	0.00	1.17
	0.00	0.00	0.00	40.00	40.00	20.00	0.00	0.00	
	0.00	0.00	0.00	1.22	5.41	33.33	0.00	0.00	
기타	5	0	2	10	7	0	9	22	55
	1.17	0.00	0.47	2.34	1.64	0.00	2.11	5.15	12.88
	9.09	0.00	3.64	18.18	12.73	0.00	16.36	40.00	
	10.20	0.00	33.33	6.10	18.92	0.00	27.27	17.46	
Total	49	9	6	164	37	3	33	126	427
	11.48	2.11	1.41	38.41	8.67	0.70	7.73	29.51	100.00

〈표 4-23〉 다섯번째 범지에서 여섯번째 범지로의 전이행렬

5번째	여섯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 력	23	1	2	5	1	0	1	16	49
	7.62	0.33	0.66	1.66	0.33	0.00	0.33	5.30	16.23
	46.94	2.04	4.08	10.20	2.04	0.00	2.04	32.65	
	63.89	16.67	66.67	4.81	4.17	0.00	5.26	14.95	
강 도	0	1	0	2	0	0	1	5	9
	0.00	0.33	0.00	0.66	0.00	0.00	0.33	1.66	2.98
	0.00	11.11	0.00	22.22	0.00	0.00	11.11	55.56	
	0.00	16.67	0.00	1.92	0.00	0.00	5.26	4.67	
강 간	0	0	0	0	1	0	1	4	6
	0.00	0.00	0.00	0.00	0.33	0.00	0.33	1.32	1.99
	0.00	0.00	0.00	0.00	16.67	0.00	16.67	66.67	
	0.00	0.00	0.00	0.00	4.17	0.00	5.26	3.74	
절 도	9	4	1	82	6	1	8	53	164
	2.98	1.32	0.33	27.15	1.99	0.33	2.65	17.55	54.30
	5.49	2.44	0.61	50.00	3.66	0.61	4.88	32.32	
	25.00	66.67	33.33	78.85	25.00	33.33	42.11	49.53	
사 기	3	0	0	4	11	1	1	17	37
	0.99	0.00	0.00	1.32	3.64	0.33	0.33	5.63	12.25
	8.11	0.00	0.00	10.81	29.73	2.70	2.70	45.95	
	8.33	0.00	0.00	3.85	45.83	33.33	5.26	15.89	
횡 령	0	0	0	2	1	0	0	0	3
	0.00	0.00	0.00	0.66	0.33	0.00	0.00	0.00	0.99
	0.00	0.00	0.00	66.67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1.92	4.17	0.00	0.00	0.00	
기 타	1	0	0	9	4	1	7	12	34
	0.33	0.00	0.00	2.98	1.32	0.33	2.32	3.97	11.26
	2.94	0.00	0.00	26.47	11.76	2.94	20.59	35.29	
	2.78	0.00	0.00	8.65	16.67	33.33	36.84	11.21	
Total	36	6	3	104	24	3	19	107	302
	11.92	1.99	0.99	34.44	7.95	0.99	6.29	35.43	100.00

두번째 범죄로의 전이와 두번째 범죄에서 세번째 범죄로의 전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절도의 전문화계수는 매우 높은 .46과 .38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폭력, 절도,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높은 전문화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이 세 가지 범죄에서 상당한 정도로 전문화가 진전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4-24〉 각 범죄의 전문화 계수 행렬

범죄명	1-2	2-3	3-4	4-5	5-6
폭력	.32	.27	.37	.39	.40
강도	.04	-.01	.00*	.11*	.09*
강간	.09*	.03*	.00*	.00*	.00*
살인	.00*	.00*	.00*	.00*	-
절도	.46	.38	.29	.32	.24
사기	.28	.37	.46	.31	.24*
횡령	.00*	.08*	.00*	.19*	.00*

※ 위의 표에서 '*' 표시가 붙어있는 것은 row total이 40 미만인 경우로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수치이다.¹⁶⁾

그리고 나머지의 전이행렬은 앞의 여러 행렬들과 유사한 전이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사례수가 대폭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다만 전체적인 범죄경력의 발전형태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만 언급될 것이다(이하 나머지 전이행렬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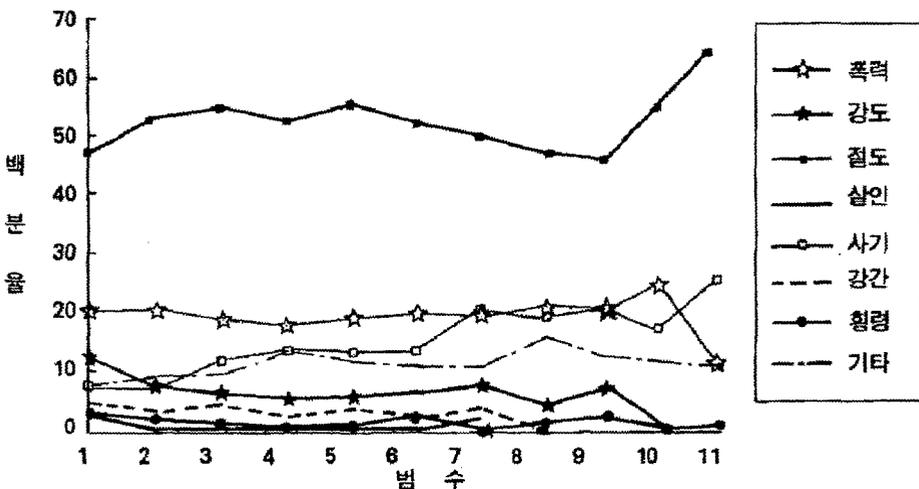
이상의 11개의 전이행렬에서 알 수 있는 범죄경력 발전형태의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관심사는 다음의 두 가지, 즉 첫째 범죄경력을 계속함에 따라 경력범죄자들이 범하게 되는 범죄는 어떤 범죄들인가하는 점과, 둘째,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로와 가로의 주변합의 비율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6) 세로의 범주가 8개이므로 일반적으로 카이제곱의 통계치를 믿을 수 있는 수준인 각 셀당 5사례 이상의 사례가 나누어 질 수 있는 최저의 수치가 40사례로 생각되어 표시하였다.

다. 위의 전이행렬에서 세로의 주변합의 비율은 n 번째 범 죄경력 의 범 죄별 구성 비를 의미하고, 가로 의 주변합 의 비율은 $n+1$ 번째 의 범 죄경력 의 범 죄별 구성 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로 의 주변합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전체합계 의 바로 앞에 있는 재범안함 의 주변합 의 비율은 n 번째 범 죄를 마지막으로 범 죄경력 에서 은퇴한 사람 의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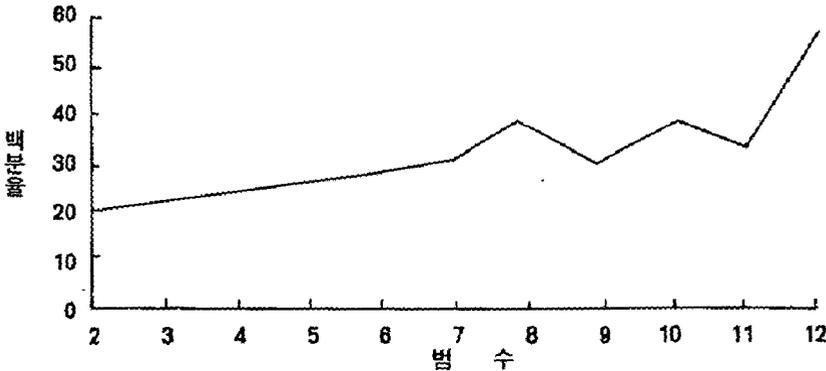
먼저 범 죄경력 을 계속함에 따라 범 죄자들이 범 하게 되는 범 죄를 살펴 보기 위해 세로 의 주변합 의 비율 의 변화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 의 <그림 4-4> 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절도 의 경우 지속적으로 50% 정도 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높은 범 수로 가면(즉 범 죄경력 을 매우 많이 쌓게 되면), 대부분 절도 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폭력 의 경우 20% 정도 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기 의 경우 초범에서 10% 이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상당한 범 죄경력 을 쌓은 이후에는 20% 정도 의 높은 구성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강도나 강간 의 경우 범 수를 쌓아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비 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절도나 폭력 의 경우 전과가 많이 늘어도 지속적인 구성비 를 유지했고, 사기 의 경우 구성비 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강도나 강간 의 경우 지속적으로 구성비 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범수별 범 죄구성비 의 변화

전과를 쌓아감에 따라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4-5>), 초범만 하고 2범을 범하지 않고 은퇴한 사람의 비율은 약 20%였는데, 범수를 계속할수록 9범과 11범에서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범수별 은퇴자비율의 추이¹⁷⁾

이상에서 살펴본 범죄경력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은 19세가 가장 많았고, 반면 최초로 비행을 한 연령은 16세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대체로 범죄경력에의 진입은 10대 후반에서 20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이행렬을 통해서 살펴본 전이유형에서 볼 때, 절도의 경우 각각의 전이행렬에서 거의 60% 정도가 다시 절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화 경향을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그외 사기와 폭력도 다음 범죄에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가 40% 내외로 대체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서는 전문화 양상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것을 재산범과 강력범으로 나누어 볼 때, 강력범에서 재산범으로 전이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으나, 재산범으로 부터 강력범으로 전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수를 거듭할수록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를 그만두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17) 8범 이후는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118사례 이하) 선이 고르지 못하다.

제5장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재범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강력법과의 비교를 통해 재산범의 재범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7년 출소자들의 재소 당시의 기록과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단적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처벌이나 가석방, 그리고 여러 다른 요인들과 재범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재산범의 재범상황과 추이, 재범 원인과, 범죄경력에 관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계의 분석결과 강력법에 비해 재산범의 전과자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5범 이상의 경력범죄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둘째, 흔히 지적되는 전과범수나 교도소에서의 징벌경험여부, 비행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초로 비행을 시작한 연령(비행에의 진입연령)은 재범에 대해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절도와 사기범죄로 나누어 재범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사기의 경우 보상/손실함수가 유의미하게 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산범 중에서도 사기범죄의 경우 손실과 보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은 평균 24세였으며, 19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범죄경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범죄자가 19세에서 22세 사이에 범죄경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최초의 비행연령은 16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식적인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범죄경력에서 절도범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 사기범과 폭력범이 다소 높았고, 살인범이나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절도범죄의 경우 다음 범죄에서도 다시 절도를 범한 사람이 약 6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전문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

나 폭력범도 각각 40% 정도가 다시 사기나 폭력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전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특히 사기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범죄에서 전문화의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일곱째, 재산범의 경우 강력범으로 전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강력범은 재산범으로 전이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를 계속할수록 절도나 사기, 폭력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수를 거듭할수록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의 효과로 보여지는데, 두 가지의 분석(재범의 원인과 범죄경력의 분석) 모두에서 연령의 효과는 두드러졌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범 중에서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에 의한 수익에 대해 보다 확실한 몰수가 필요할 것이다. 범죄의 성격상 사기의 경우 매우 합리적인 선택하에 행해지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은 범죄억제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확실하게 박탈하거나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절도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매우 높고, 전문화 수준도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히 절도범죄에 있어서 전문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 이는 절도로 생계수단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출소 후 적당한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범의 경우 출소 후 단시일 내에 재범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소 후 6-8개월 정도를 특별관리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출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조기에 비행을 시작하거나 전과가 많은 사람의 경우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선도를 받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재산범과 강력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범죄와 재산범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종단적 연구설계를 도입하여 재산범의 재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재범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설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 별로 행해지지 않은 실정에서, 이 연구는 종단적 설계를 가진 출소자 연구를 통해 미흡하나마 강력범의 경우와 함께 재산범의 재범여부 및 재범관련요인들을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다루어 보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재범의 구체적 원인과 과정, 그리고 범죄경력 중에서도 심각화나 전문화 등의 여러 영역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미미한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구방법의 분야에서도 순수한 동년배집단연구나 다년간에 걸친 패널스타디와 같은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경찰청. 「범죄분석」

김준호·이동원. 1994.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이순래. 1995. 「청소년범죄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문영호. 1993.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의 박탈」, 대검찰청·UNAFEI 주최,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박철현. 1994. “강력범에 대한 가석방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
사정책연구소식」, 5·6월호

법무부. 1969. 「교정누진처우규정」

법무부 교정국. 1988. 「교정수용통계백년보」 2권

변동윤. 1991. “교정시설내 처우를 중심으로 본 재범방지 대책”, 「교정」, 7-8
월호

서울보호관찰소. 1992-1994. 「보호관찰현황」, 서울보호관찰소

이병기·노성호. 1994.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병기·류철원.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석. 1989. “소년범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16호

이윤호. 1991.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철현. 1994.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이성식. 1994.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진수명·김영진. 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외국문헌

- Agresti, Alan. 1990. *Categorical Data Analysis*,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Blumstein, Alfred, and Jacqueline Cohen and David P. Farrington. 1988. "Longitudinal and Criminal Career Research: Further Clarifications", *Criminology*, Vol.26, No.1
- Chaiken, J. & M. Chaiken. 1982. *Varieties of Criminal Behavior*, Rand Report R-2814-NIJ. Rand Corporation. 참조
- Cochran, John K. & Mitchell B Chamlin. 1992. "The Influence of A Cost-Benefit Function on the Supply of Economic Crimes: A Specific Test of the Profit Maximizing Thesis",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Vol.15, No.2
- Farrington, P. David. 1986. "Age and Crime", Michael Tonry and Norval Morris ed., *Crime and Justice*, Vol.7, Chicago Univ. Press.
- .1992. "Criminal Career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2, No.4
- Gould, Leroy, and George M. Camp and John K. Peck. 1986. "Economic and Sociological Models of Property Crime: An Analysis of Bank Robbery Rates in The United States", UMI micro-film
- Holzman, Harold. 1982. "The Rationalistic Opportunity Perspective on Criminal Behavior: Toward a Reformul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Notion of Property Crime as Work", *Crime & Delinquency*, April
- Homel, Ross. 1988, *Policing and Punishing the Drinking Driver: A Study of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Springer-Verlag
- Kempf, Kimberly L.. 1987. "Specialization and the Criminal Career",

- Criminology*, Vol.25, No.2
- Kinkade, Patrick T., and Matthew C. Leone. 1992, "The Effects of 'Tough' Drink Driving Law on Policing: A Case Study", *Crime & Delinquency*, Vol.38, No.2, April
- Liska, Allen E. 1988. *Perspectives on Deviance*, 장상희·이성호·강세영 역,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 Rand, Alicia. 1987. "Transitional Life Events and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nd Crime", Marvin E. Wolfgang, Terence P. Thornberry and Robert M. Figlio,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Univ. Press
- Rosenberg, Morris. 1968. *The Logic of Survey Analysis*, Basic Books
- Ross, H. Laurence, Richard McCleary and Thomas Epperlein. 1981-82. "Deterrence of Drinking and Driving in France: an evaluation of the law of July 12, 1978", *Law & Society Review*, Vol.16, No.3
- Shannon, L. 1988. *Criminal Career Continuity: Its Social Context*,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Sherman, Lawrence W. & Richard A Berk. 1984.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April
- Smith, D. Randall and William R. Smith and Elliot Noma. 1984. "Delinquent Career-Lines: A Conceptual Link Between Theory and Juvenile Offens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
- Tracy, Paul E., Marvin E. Wolfgang, Robert M. Figlio. 1990. *Delinquency Careers in Two Birth Cohorts*, New York: Plenum Press
- Visher, Christy A.. 1991. "Career Offenders and Selective Incapacitation", edited by Joseph F. Sheley, *Criminology*,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Wolfgang, Marvin E., Robert M. Figlio, and Thorsten Sellin.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The Univ. of Chicago Press

Yamaguchi, Kazuo. 1991. *Event History Analysis*, Sage Publications

A Study on the Recidivism of the Released Property-offenders: In Comparison with Violent Offenders

Choi, In-Sub*

Park, Cheol-Hyun**

1. Introduction

Recently, one of the most notable phenomena in crime problem in Korea has bee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recidivists among offenders. The proportion increased, for example, from 14.1% (violent criminals), 11.6% (property criminals) in 1972 to 51.3%, 53% in 1992 respectively. However, not much studies has been done on the causes patterns of increasing recidivism.

It appears that the nature of recidivism is very complex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 duration of criminal careers. Particularly, property crimes are very instrumental property criminals seem to have long-lasting career as composed to violent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nature of recidivism career patterns find factors related to such phenomena.

2. Method

In this study, two kind of data were utilized: The first one is the

* Director of Research Team for Crime in General K.I.C., Ph.D. in Criminology

** Researcher, K.I.C.

data obtained through two inmates' files(i.e. Classification Table Inmate's Individual File)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correctional record on the property criminals released(N=605) in 1987.

The former(Classification Table) has inmates' personal information their criminal characters such as family relationship, career of crime, types of crimes committed, etc.. The latter includes information on correctional education performance such as technical training, penalties, the cell-allocation etc.. The second data is the police arrest records of those ex-inmates which were examined in 1993(violent criminals) 1994(property criminals). This data contains information on record of arrests made since their release in 1987. The important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are shown in Table 1. The effects of various variables referred in this Table on recidivism were analyzed by bo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vent history analysis.

And transition matrix analysis was used to find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n each crime. For analysis, crimes were classified into following eight crime-type. First, 'violence' consists of various types of violence, injury, death by violence or injury etc.. Second, 'rubbery' consists of simple rubbery, rubbery with rape or injury etc.. Third, 'rape' consists of simple rape, rape with injury etc.. Fourth, 'homicide' include simple murder various types of murder. Fifth, theft consists of petty theft, burglary, larceny etc.. Sixth, 'fraud' includes various type of frauds. Seventh, 'embezzlement' consist of various embezzlements. Finally, 'the other' includes the rest of other types of crime. the following Farrington's coefficient of specialization was used.

$$\text{the Coefficient of specialization} = \frac{\text{the observed value} - \text{the expected value}}{\text{raw total} - \text{the expected value}}$$

(Table 1) The Meaning of variables used in analysis

The name of variables group	Variables' name	Meaning
Dependent variables	recidivism	the first arrest after release
Punishment variables	relative severity	the standardized length of sentence for each type of crime
	reward/cost function	$\ln(\text{reward/cost})$
	arrest-time	the time from commission of crime to arrest.
Present-crime variables	collective/individual offender	the number of persons committing crime
	the degree of preparation	How much did one plan?
Delinquency and criminal career	prior-record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efore
	onset age	the age of committing first crime
	tattoo/knife mark	tattoo or knife mark on body
	first drinking age	the age of first drinking
	first smoking age	the age of first smoking
	first intercourse	the age of first intercourse
Correction variables	release-type	release on the expiration of prison term or parole, indeterminate sentence
	penalty	penalty experience or none in prison
	technical license	the acquisition of 2nd-class technical license in prison
Social adaption &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release-age	age upon release
	schooling	one's years of schooling
	class	class evaluated by prison officer
	I. Q.	I Q
	family siz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religion	having religion or non
	marriage	married, single or divorce, etc.
	first-occupation age	the age of having first occupation
the state of guardianship	the level of guardianship	

Here, the observed value the expected value are the values in the diagonal cells in the transition matrix. If the tendency shows complete generalization, the value of this coefficient would be 0. If the tendency shows complete specialization, the value of this coefficient would be 1.

3. Findings

The major findings i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on crime delinquency career turn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recidivism.

Second, especially in fraud, significant effects of cost/benefit function, which was derived from rational choice theory, on recidivism was found. This may mean that fraud is very instrumental is often committed through a rational choice.

Third, average age of onset to criminal career is 24, most of criminals begin their criminal career at age of between 19 22.

Fourth, The highest level of specialization is found in theft(the value of the specialization coefficient at transition from first crime to second is .46, the value of coefficient at transition from second crime to third is .38) the second highest specialization is found in fraud(.28 .37) violence(.32 .27). Interestingly, the 60 percent of all thieves commit again thefts in the next criminal event, which may mean that theft is very occupational crime in Korea.

Fifth, it was found that property criminals rarely transit to violent criminals, whereas many violent criminals transit to property criminals. It also appears that as the criminal careers continue, crime of theft violence are increasingly committed.

4. Conclusion

It is found that while property crime is generally very instrumental, theft fraud, two most prevalent property crimes, are different in some respect. For example, whereas theft shows very high recidivism rate occupational nature, fraud tends to be committed more through rational choice. Therefore if appears that reducing expected reward in crime may be more effective in deterring fraud, it is needed to thoroughly deprive the profit by crime.

Thieves, with its high recidivism rate high specialization tendency, may need to be more intensively observed especially right after release, thereby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recidivism.

〈부 록 1〉

조사표(A형)

I. 재소자신분카드 조사사항

- 1-1. 성명 ()
- 1-2. 주민등록번호 (-)
- 1-3. 영장집행일 (19 년 월 일)
- 1-4. 미결입소일 (19 년 월 일)
- 1-5. (오른쪽 맨아래)출소사유
 ① 형기종료 ② 가석방 ③ 사면 ④ 부정기형 종료
- 1-6. (오른쪽 맨아래)출소일 (1987 년 월 일)
- 3-1. (신상관계)출생별
 ① 적자 ② 서자 ③ 사생아
- 3-2. (신상관계)최종학력
 ① 무학 ② 국졸(퇴) ③ 중졸(퇴) ④ 고졸(퇴) ⑤ 전문대(퇴) ⑥ 4년제 대학(퇴)
- 3-3. (신상관계)재산유무 (부동산 동산= 만원)
- 3-4. (인상특징)신체상의 문신이나 칼자국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 |
|---------------------------------------|
| 4-1. (범죄개요)사건발생일 (198 년 월 일) |
| 4-2. (범죄개요)범행시 피해액 () |
- 5-1. (동태시찰)교육여부(해당사항은 모두 표시)
 ① 작업지정 ② (정예)직업훈련 ③ 재소자특별순화교육
 ④ 새마을정신교육 ⑤ 학과교육 ⑥ 기타()
- 5-2. (동태시찰)기능사자격증 취득여부
 ① 있다(급) ② 없다
- 6-1. (징벌사항)징벌횟수 (총 회)
- 7-1. (누진처우상황)분류심사급별판정 (급 류)

7-2. (누진처우상황)분류심사급최종승급 (급 류)

7-3. (누진처우상황)사방배치

① 잡거 ② 혼거(주간 야간)

7-4. (누진처우상황)교육방침

① 작업교육 ② 학교교육

7-5. (누진처우상황)지능 (IQ)

II. 수형자 분류심사표 조사사항

0-1. 수용분류급 (급 류)

1-1. (수형자분류)첫 조사연도 (19 년)

2-1. 형판결 사항(집행형기) ※죄명은 정확히 적을 것 ex) 특수강도등

	(1) 1형	(2) 2형	(3) 3형
죄 명			
형 기	년 월	년 월	년 월
형 기 기 산 일	198 년 월 일	198 년 월 일	198 년 월 일
형 기 종 료 일	198 년 월 일	198 년 월 일	198 년 월 일

3-1. 가족사항(있는 항목은 모두 체크)

① 부 ② 모 ③ 처 ④ 자 ⑤ 형제자매 ⑥ 할머니·할아버지 (본인 외 총 명)

3-2. 부의 직업 ()

4-1. 생활정도

① 상 ② 중상 ③ 중하 ④ 하

4-2. 종교유무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4-3. 최초 음주시기 (세부터)

4-4. 최초 흡연시기 (세부터)

4-5. 최초 성경험시기 (세부터)

4-6. 범행전 혼인관계

① (결혼한)배우자와 같이 살았음 ② 동거하고 있었음 ③ 미혼 ④ 이혼

5-1. 학업성적

① 상 ② 중 ③ 하

6-1. 최초의 직업 및 당시 연령 (직위) (연령 세)

6-2. 범행당시의 최종직업 ()

6-3. (직장생활개요 참조)전직 횟수 (회)

8-1. 지능지수(첨부된 검사표가 있으면 참조) IQ()

8-2. 일반성격검사(첨부된 검사표가 있으면 참조)

성격	A	R	E	S	T
%					

8-3. MMPI 다면적 인성검사(첨부된 검사표가 있으면 참조)

척도	L	F	K	1	2	3	4	5	6	7	8	9	10
				HS+.5K	D	HY	Pd+.4K	MF	Pa	Pt+1K	SC+1k	Ma+.2K	SI
T점수													

9-1. 정신측정(첨부된 검사표가 있으면 참조)

① 정상 ② 수동공격성 ③ 정신박약 ④ 신경증 ⑤ 정신장애

11-1. 집단범 또는 단독범여부

① 집단범 ② 단독범(12-1로)

11-2. (집단범일 경우)본인역할

① 주범 ② 종범

11-3. (집단범일 경우)집단인원 (명)

12-1. 최초의 비행시 연령 (세) ←

12-2. 최초의 비행명 ()

〈부록 2〉

약식 범죄경력조회 결과표(3범인 경우 예)

단말번호 : ****		범죄경력조회					
조회근거 : ****		****	*****	참조			
인적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일련번호 : * ***			
사항	본적 : *****		지문 : ***_**				
NO	작성일	입건관서명	작성번호	죄 명	처분일	처분관서명	처분결과
01							
02							
03							

상기와 같이 자료를 통보합니다.

조회용도 :

조회외뢰자 :

작성자 : (인)

작성년월일 :

**경찰(청)서장

**** 실효된 형 악용 말고..진과사실 누설말자 ****

<부록 3>

통 계 표

<표 3-9> 배임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배임	계	전과 없음	전 과 별					5범이상
			소계	1범	2범	3범	4범	
1972	4,208 (100.0)	3,847 (91.4)	361 -	265 (6.3)	63 (1.5)	17 (0.4)	4 (0.1)	12 (0.3)
1973	4,562 (100.0)	4,040 (88.6)	522 -	370 (8.1)	82 (1.8)	35 (0.8)	15 (0.3)	20 (0.4)
1974	3,949 (100.0)	3,414 (86.5)	535 -	374 (9.5)	101 (2.6)	33 (0.8)	12 (0.3)	15 (0.4)
1975	4,705 (100.0)	3,937 (83.7)	768 -	483 (10.3)	160 (3.4)	52 (1.1)	32 (0.7)	41 (0.9)
1976	5,867 (100.0)	4,877 (83.1)	994 -	651 (11.1)	178 (3.0)	76 (1.3)	28 (0.5)	61 (1.0)
1977	5,418 (100.0)	4,295 (79.3)	1,123 -	650 (12.0)	230 (4.2)	111 (2.0)	57 (1.1)	75 (1.4)
1978	5,340 (100.0)	3,996 (74.8)	1,344 -	773 (14.5)	267 (5.0)	135 (2.5)	78 (1.5)	91 (1.7)
1979	5,545 (100.0)	4,100 (73.9)	1,445 -	801 (14.4)	291 (5.2)	156 (2.8)	73 (1.3)	124 (2.2)
1980	7,904 (100.0)	6,145 (77.7)	1,754 -	961 (12.2)	371 (4.7)	166 (2.1)	100 (1.3)	156 (2.0)
1981	12,311 (100.0)	9,357 (76.0)	2,954 -	1,521 (12.4)	689 (5.6)	313 (2.5)	161 (1.3)	270 (2.2)
1982	10,905 (100.0)	7,473 (68.5)	3,432 -	1,572 (14.4)	762 (7.0)	439 (4.0)	240 (2.2)	419 (3.8)
1983	8,485 (100.0)	5,479 (64.6)	3,006 -	1,286 (15.2)	671 (7.9)	419 (4.9)	216 (2.5)	412 (4.9)
1984	8,932 (100.0)	5,528 (61.9)	3,404 -	1,296 (14.5)	763 (8.5)	481 (5.4)	275 (3.1)	589 (6.6)
1985	8,292 (100.0)	4,878 (58.8)	3,414 -	1,282 (15.5)	815 (9.8)	448 (5.4)	276 (3.3)	593 (7.2)
1986	7,301 (100.0)	4,198 (57.5)	3,103 -	1,139 (15.6)	679 (9.3)	426 (5.8)	271 (3.7)	588 (8.1)
1987	6,374 (100.0)	3,629 (56.9)	2,745 -	984 (15.4)	597 (9.4)	366 (5.7)	244 (3.8)	554 (8.7)
1988	5,669 (100.0)	3,065 (54.1)	2,604 -	871 (15.4)	526 (9.3)	353 (6.2)	224 (4.0)	630 (11.1)
1989	5,709 (100.0)	3,042 (53.3)	2,667 -	933 (16.3)	551 (9.7)	336 (5.9)	199 (3.5)	648 (11.4)
1990	5,492 (100.0)	3,004 (54.7)	2,488 -	829 (15.1)	466 (8.5)	337 (6.1)	216 (3.9)	640 (11.7)
1991	5,874 (100.0)	3,071 (52.3)	2,803 -	826 (14.1)	568 (9.7)	396 (6.7)	200 (3.4)	813 (13.8)
1992	6,409 (100.0)	3,097 (48.3)	3,312 -	992 (15.5)	631 (9.8)	447 (7.0)	319 (5.0)	923 (14.4)

〈표 3-10〉 손괴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손괴	계	전과 없음	전 과 별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1972	2,645 (100.0)	2,371 (89.6)	274 -	179 (6.8)	62 (2.3)	18 (0.7)	7 (0.3)	8 (0.3)
1973	2,469 (100.0)	2,164 (87.6)	305 -	196 (7.9)	68 (2.8)	21 (0.9)	10 (0.4)	10 (0.4)
1974	2,310 (100.0)	1,957 (84.7)	353 -	242 (10.5)	68 (2.9)	16 (0.7)	12 (0.5)	15 (0.6)
1975	2,719 (100.0)	2,241 (82.4)	478 -	280 (10.3)	115 (4.2)	40 (1.5)	14 (0.5)	29 (1.1)
1976	3,136 (100.0)	2,487 (79.3)	649 -	411 (13.1)	135 (4.3)	48 (1.5)	27 (0.9)	28 (0.9)
1977	2,882 (100.0)	2,097 (72.8)	785 -	453 (15.7)	174 (6.0)	75 (2.6)	36 (1.2)	47 (1.6)
1978	2,836 (100.0)	2,043 (72.0)	793 -	451 (15.9)	166 (5.9)	85 (3.0)	44 (1.6)	47 (1.7)
1979	2,624 (100.0)	1,815 (69.2)	809 -	409 (15.6)	190 (7.2)	85 (3.2)	50 (1.9)	75 (2.9)
1980	2,679 (100.0)	1,786 (66.7)	898 -	433 (16.2)	218 (8.1)	93 (3.5)	61 (2.3)	93 (3.5)
1981	2,839 (100.0)	1,902 (67.0)	937 -	461 (16.2)	201 (7.1)	97 (3.4)	67 (2.4)	111 (3.9)
1982	2,880 (100.0)	1,888 (65.6)	992 -	453 (15.7)	233 (8.1)	130 (4.5)	71 (2.5)	105 (3.6)
1983	2,702 (100.0)	1,615 (59.8)	1,087 -	457 (16.9)	255 (9.4)	151 (5.6)	94 (3.5)	130 (4.8)
1984	2,698 (100.0)	1,612 (59.7)	1,086 -	402 (14.9)	283 (10.5)	152 (5.6)	94 (3.5)	155 (5.7)
1985	2,423 (100.0)	1,341 (55.3)	1,082 -	446 (18.4)	238 (9.8)	130 (5.4)	89 (3.7)	179 (7.4)
1986	2,592 (100.0)	1,439 (55.5)	1,153 -	432 (16.7)	269 (10.4)	166 (6.4)	78 (3.0)	208 (8.0)
1987	2,539 (100.0)	1,323 (52.1)	1,216 -	455 (17.9)	230 (9.1)	166 (6.5)	112 (4.4)	253 (10.0)
1988	2,643 (100.0)	1,291 (48.8)	1,352 -	500 (18.9)	261 (9.9)	178 (6.7)	132 (5.0)	281 (10.6)
1989	3,099 (100.0)	1,535 (49.5)	1,564 -	553 (17.8)	311 (10.0)	217 (7.0)	149 (4.8)	334 (10.8)
1990	3,364 (100.0)	1,722 (51.2)	1,642 -	507 (15.1)	364 (10.8)	215 (6.4)	154 (4.6)	402 (12.0)
1991	3,743 (100.0)	1,838 (49.1)	1,905 -	583 (15.6)	393 (10.5)	267 (7.1)	166 (4.4)	496 (13.3)
1992	3,723 (100.0)	1,646 (44.2)	2,077 -	664 (17.8)	431 (11.6)	249 (6.7)	213 (5.7)	520 (14.0)

〈표 3-11〉 장물범죄의 전과자 추이

단위 : 명(%)

손괴	계	전과 없음	전 과 별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1972	13,873 (100.0)	12,850 (92.6)	1,023 -	690 (5.0)	160 (1.2)	69 (0.5)	49 (0.4)	55 (0.4)
1973	13,344 (100.0)	12,190 (91.4)	1,154 -	805 (6.0)	178 (1.3)	74 (0.6)	31 (0.2)	66 (0.5)
1974	13,430 (100.0)	12,204 (90.9)	1,226 -	824 (6.1)	196 (1.5)	94 (0.7)	38 (0.3)	74 (0.6)
1975	13,469 (100.0)	12,114 (89.9)	1,355 -	913 (6.8)	230 (1.7)	93 (0.7)	40 (0.3)	79 (0.6)
1976	17,095 (100.0)	15,124 (88.5)	1,971 -	1,308 (7.7)	331 (1.9)	166 (1.0)	67 (0.4)	99 (0.6)
1977	12,257 (100.0)	10,604 (86.5)	1,653 -	1,043 (8.5)	303 (2.5)	143 (1.2)	58 (0.5)	106 (0.9)
1978	9,651 (100.0)	8,195 (84.9)	1,411 -	863 (8.9)	264 (2.7)	119 (1.2)	81 (0.8)	84 (0.9)
1979	7,080 (100.0)	5,764 (81.4)	1,316 -	728 (10.3)	286 (4.0)	113 (1.6)	81 (1.1)	108 (1.5)
1980	8,429 (100.0)	6,927 (82.2)	1,502 -	761 (9.0)	331 (3.9)	157 (1.9)	93 (1.1)	160 (1.9)
1981	9,275 (100.0)	7,322 (78.9)	1,953 -	998 (10.8)	418 (4.5)	224 (2.4)	111 (1.2)	202 (2.2)
1982	10,025 (100.0)	7,258 (72.4)	2,767 -	1,285 (12.8)	580 (5.8)	376 (3.8)	219 (2.2)	307 (3.1)
1983	8,159 (100.0)	5,577 (68.4)	2,582 -	1,144 (14.0)	598 (7.3)	340 (4.2)	180 (2.2)	320 (3.9)
1984	6,469 (100.0)	4,223 (65.3)	2,246 -	999 (15.4)	467 (7.2)	276 (4.3)	191 (3.0)	313 (4.8)
1985	5,567 (100.0)	3,526 (63.3)	2,041 -	802 (14.4)	491 (8.8)	245 (4.4)	166 (3.0)	337 (6.1)
1986	5,354 (100.0)	3,350 (62.6)	2,004 -	779 (14.5)	478 (8.9)	266 (5.0)	164 (3.1)	317 (5.9)
1987	4,314 (100.0)	2,594 (60.1)	1,720 -	645 (15.0)	365 (8.5)	248 (5.7)	181 (4.2)	281 (6.5)
1988	3,560 (100.0)	2,084 (58.5)	1,476 -	535 (15.0)	344 (9.7)	188 (5.3)	121 (3.4)	288 (8.1)
1989	3,342 (100.0)	1,877 (56.2)	1,465 -	501 (15.0)	330 (9.9)	218 (6.5)	130 (3.9)	286 (8.6)
1990	2,850 (100.0)	1,694 (59.4)	1,156 -	372 (13.1)	239 (8.4)	138 (4.8)	117 (4.1)	290 (10.2)
1991	2,837 (100.0)	1,630 (57.5)	1,207 -	363 227 (12.8)	183 (8.0)	117 (6.5)	317 (4.1)	(11.2)
1992	2,519 (100.0)	1,456 (57.8)	1,063 -	371 (14.7)	205 (8.1)	137 (5.4)	86 (3.4)	264 (10.5)

〈표 4-25〉 여섯번째 범죄에서 일곱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첫번째	일곱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절도	사기	기타	재범안함	
폭 력	8	1	0	1	5	2	2	17	36
	4.10	0.51	0.00	0.51	2.56	1.03	1.03	8.72	18.46
	22.22	2.78	0.00	2.78	13.89	5.56	5.56	47.22	
	42.11	20.00	0.00	100.00	8.47	9.52	18.18	22.08	
강 도	0	1	0	0	1	0	0	4	6
	0.00	0.51	0.00	0.00	0.51	0.00	0.00	2.05	3.08
	0.00	16.67	0.00	0.00	16.67	0.00	0.00	66.67	
	0.00	20.00	0.00	0.00	1.69	0.00	0.00	5.19	
강 간	1	0	0	0	0	0	0	2	3
	0.51	0.00	0.00	0.00	0.00	0.00	0.00	1.03	1.54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66.67	
	5.26	0.00	0.00	0.00	0.00	0.00	0.00	2.60	
절 도	7	2	2	0	46	5	3	39	104
	3.59	1.03	1.03	0.00	23.59	2.56	1.54	20.00	53.33
	6.73	1.92	1.92	0.00	44.23	4.81	2.88	37.50	
	36.84	40.00	100.00	0.00	77.97	23.81	27.27	50.65	
사 기	2	1	0	0	2	9	3	7	24
	1.03	0.51	0.00	0.00	1.03	4.62	1.54	3.59	12.31
	8.33	4.17	0.00	0.00	8.33	37.50	12.50	29.17	
	10.53	20.00	0.00	0.00	3.39	42.86	27.27	9.09	
횡 령	0	0	0	0	1	1	0	1	3
	0.00	0.00	0.00	0.00	0.51	0.51	0.00	0.51	1.54
	0.00	0.00	0.00	0.00	33.33	33.33	0.00	33.33	
	0.00	0.00	0.00	0.00	1.69	4.76	0.00	1.30	
기 타	1	0	0	0	4	4	3	7	19
	0.51	0.00	0.00	0.00	2.05	2.05	1.54	3.59	9.74
	5.26	0.00	0.00	0.00	21.05	21.05	15.79	36.84	
	5.26	0.00	0.00	0.00	6.78	19.05	27.27	9.09	
Total	19	5	2	1	59	21	11	77	195
	9.74	2.56	1.03	0.51	30.26	10.77	5.64	39.49	100.00

<표 4-26> 일곱번째 범죄에서 여덟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일곱번째	여덟번째 범죄							Total
	폭력	살인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력	3	0	3	0	0	1	12	19
	2.54	0.00	2.54	0.00	0.00	0.85	10.17	16.10
	15.79	0.00	15.79	0.00	0.00	5.26	63.16	
	25.00	0.00	10.34	0.00	0.00	11.11	22.22	
강도	1	0	0	0	0	1	3	5
	0.85	0.00	0.00	0.00	0.00	0.85	2.54	4.24
	20.00	0.00	0.00	0.00	0.00	20.00	60.00	
	8.33	0.00	0.00	0.00	0.00	11.11	5.56	
강간	1	0	0	0	0	0	1	2
	0.85	0.00	0.00	0.00	0.00	0.00	0.85	1.69
	50.00	0.00	0.00	0.00	0.00	0.00	50.00	
	8.33	0.00	0.00	0.00	0.00	0.00	1.85	
살인	0	0	0	0	0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85	0.85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5	
절도	4	1	23	2	1	5	23	59
	3.39	0.85	19.49	1.69	0.85	4.24	19.49	50.00
	6.78	1.69	38.98	3.39	1.69	8.47	38.98	
	33.33	100.00	79.31	16.67	100.00	55.56	42.59	
사기	1	0	3	8	0	2	7	21
	0.85	0.00	2.54	6.78	0.00	1.69	5.93	17.80
	4.76	0.00	14.29	38.10	0.00	9.52	33.33	
	8.33	0.00	10.34	66.67	0.00	22.22	12.96	
기타	2	0	0	2	0	0	7	11
	1.69	0.00	0.00	1.69	0.00	0.00	5.93	9.32
	18.18	0.00	0.00	18.18	0.00	0.00	63.64	
	16.67	0.00	0.00	16.67	0.00	0.00	12.96	
Total	12	1	29	12	1	9	54	118
	10.17	0.85	24.58	10.17	0.85	7.63	45.76	100.00

〈표 4-27〉 8번째 범죄에서 9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8번째	9번째 범죄								Total
	폭력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재범안함	
폭 력	5	0	0	1	0	0	2	4	12
	7.81	0.00	0.00	1.56	0.00	0.00	3.13	6.25	18.75
	41.67	0.00	0.00	8.33	0.00	0.00	16.67	33.33	
	62.50	0.00	0.00	5.26	0.00	0.00	50.00	19.05	
살 인	0	0	0	0	0	0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6	1.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76	
절 도	2	1	1	15	2	0	0	8	29
	3.13	1.56	1.56	23.44	3.13	0.00	0.00	12.50	45.31
	6.90	3.45	3.45	51.72	6.90	0.00	0.00	27.59	
	25.00	50.00	100.00	78.95	25.00	0.00	0.00	38.10	
사 기	0	1	0	0	5	0	2	4	12
	0.00	1.56	0.00	0.00	7.81	0.00	3.13	6.25	18.75
	0.00	8.33	0.00	0.00	71.67	0.00	16.67	33.33	
	0.00	50.00	0.00	0.00	62.50	0.00	50.00	19.05	
횡 령	0	0	0	0	0	0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6	1.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76	
기 타	1	0	0	3	1	1	0	3	9
	1.56	0.00	0.00	4.69	1.56	1.56	0.00	4.69	14.06
	11.11	0.00	0.00	33.33	11.11	11.11	0.00	33.33	
	12.50	0.00	0.00	15.79	12.50	100.00	0.00	14.29	
Total	8	2	1	19	8	1	4	21	64
	12.50	3.13	1.56	29.69	12.50	1.56	6.25	32.81	100.00

〈표 4-28〉 9번째 범죄에서 10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9번째	10번째 범죄					Total
	폭력	절도	사기	기타	재범안함	
폭 력	6	1	0	0	4	8
	6.98	2.33	0.00	0.00	9.30	18.60
	37.50	12.50	0.00	0.00	50.00	
	60.00	7.14	0.00	0.00	21.05	
강 도	0	0	1	1	0	2
	0.00	0.00	2.33	2.33	0.00	4.65
	0.00	0.00	50.00	50.00	0.00	
	0.00	0.00	33.33	50.00	0.00	
강 간	0	0	0	0	1	1
	0.00	0.00	0.00	0.00	2.33	2.33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5.26	
절 도	1	12	1	0	5	19
	2.33	27.91	2.33	0.00	11.63	44.19
	5.26	63.16	5.26	0.00	26.32	
	20.00	85.71	33.33	0.00	26.32	
사 기	0	0	1	1	6	8
	0.00	0.00	2.33	2.33	13.95	18.60
	0.00	0.00	12.50	12.50	75.00	
	0.00	0.00	33.33	50.00	31.58	
횡 령	0	0	0	0	1	1
	0.00	0.00	0.00	0.00	2.33	2.33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5.26	
기 타	1	1	0	0	2	4
	2.33	2.33	0.00	0.00	4.65	9.30
	25.00	25.00	0.00	0.00	50.00	
	20.00	7.14	0.00	0.00	10.53	
Total	5	14	3	2	19	43
	11.63	32.56	6.98	4.65	44.19	100.00

〈표 4-29〉 10번째 범죄에서 11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10번째	11번째 범죄					Total
	폭력	절도	사기	기타	재범안함	
폭 력	1	1	0	0	3	5
	4.17	4.17	0.00	0.00	12.50	20.83
	20.00	20.00	0.00	0.00	60.00	
	100.00	10.00	0.00	0.00	33.33	
절 도	0	8	1	1	4	14
	0.00	33.33	4.17	4.17	16.67	58.33
	0.00	57.14	7.14	7.14	28.57	
	0.00	80.00	33.33	100.00	44.44	
사 기	0	1	2	0	0	3
	0.00	4.17	8.33	0.00	0.00	12.50
	0.00	33.33	66.67	0.00	0.00	
	0.00	10.00	66.67	0.00	0.00	
기 타	0	0	0	0	2	2
	0.00	0.00	0.00	0.00	8.33	8.33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22.22	
Total	1	10.	3	1	9	24
	4.17	41.67	12.50	4.17	37.50	100.00

〈표 4-30〉 11번째 범죄에서 12번째 범죄로의 전이행렬

11번째	12번째 범죄				Total
	폭력	절도	기타	재범안함	
폭 력	1	0	0	0	1
	6.67	0.00	0.00	0.00	6.67
	10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절 도	0	2	1	7	10.
	0.00	13.33	6.67	46.67	66.67
	0.00	20.00	10.00	70.00	
	0.00	50.00	100.00	77.78	
사 기	0	1	0	2	3
	0.00	6.67	0.00	13.33	20.00
	0.00	33.33	0.00	66.67	
	0.00	25.00	0.00	22.22	
기 타	0	1	0	0	1
	0.00	6.67	0.00	0.00	6.67
	0.00	100.00	0.00	0.00	
	0.00	25.00	0.00	0.00	
Total	1	4	1	9	15
	6.67	26.67	6.67	60.00	100.00

연구진

연구책임자 : 최 인 섭(연구실장)

연구자 : 박 철 현(연구원)